



# 차별금지, 평등 및 다양성에 관한 고위급 실무그룹 결론 보고서

CONCLUSION PAPER OF THE HIGH-LEVEL GROUP ON NON-DISCRIMINATION, EQUALITY AND DIVERSITY

## 연령평등 및 연령에 기반한 차별금지

Age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age

© ASEM Global Ageing Center 2025

Originally published by the European Union under the title *Age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Age: Conclusion Paper of the High-Level Group on Non-Discrimination, Equality and Diversity*. © European Union, 2024. <https://op.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731b1e54-b6a9-11ef-91ed-01aa75ed71a1/language-en> CC BY 4.0. This translation was produced independently for informational purposes; the English version remains the primary reference text officially published by the European Union. The quality and fidelity of the translation are the sole responsibility of the translator.

©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2025

본 번역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작업물이 아닙니다. 유럽연합은 본 번역의 내용 및 정확성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원본은 *Age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Age: Conclusion Paper of the High-Level Group on Non-Discrimination, Equality and Diversity* (<https://op.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731b1e54-b6a9-11ef-91ed-01aa75ed71a1/language-en>)에서 참고하실 수 있으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0 Internation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에 따라 사용되었습니다.

본 문서는 차별금지, 평등 및 다양성에 관한 고위급 실무그룹(High-Level Group on Non-Discrimination, Equality and Diversity)의 제작물입니다. 평등 및 다양성에 관한 고위급 실무그룹은 모든 EU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국 간 협력과 조정을 지원하고, 차별 철폐와 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문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공식적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ASEM Global Ageing Center**

03188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13층

(82) 02.6263.9800

asemgac@asemgac.org

www.asemgac.org

## Contents

|                                   |    |
|-----------------------------------|----|
| 1. 서론                             | 5  |
| 2. 현안의 이해                         | 6  |
| 3. 연령주의와 연령차별의 영향                 | 9  |
| 3.1 연령주의와 연령차별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 9  |
| 3.2 연령주의와 연령차별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 12 |
| 4. 유럽 및 국제적 차원의 법적·정책적 맥락         | 12 |
| 4.1 법적 체계                         | 13 |
| 4.2 EU 및 국제 정책의 맥락                | 14 |
| 5. 도전 과제의 이해: 진전이 필요한 영역들         | 18 |
| 6. 최근 정책 이니셔티브 동향과 강화된 대응 조치      | 21 |
| 6.1 교차성                           | 21 |
| 6.2 EU 회원국의 법제 및 전략               | 22 |
| 6.3 연구 및 데이터 수집                   | 25 |
| 6.4 고용과 사회보장 부문에서의 차별 대응과 다양성 증진  | 27 |
| 6.5 민주주의와 정치적 대표성                 | 28 |
| 6.6 교육·훈련 및 평생학습 분야에서의 차별 예방 및 대응 | 31 |
| 6.7 모두를 위한 보건 및 장기요양 서비스 접근성 보장   | 32 |
| 6.8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해소     | 34 |
| 6.9 고정관념과 편향된 묘사에 대한 대응           | 37 |
| 6.10 노인 관련 분야별 과제와 EU의 대응         | 38 |
| 6.11 연령주의 및 연령차별 대응을 위한 EU 재정 지원  | 39 |
| 6.12 세대 간 연대                      | 41 |
| 6.13 인정, 인식 제고 및 주체성 강화           | 42 |
| 6.14 모범을 통한 선도                    | 42 |
| 6.15 국제 협력                        | 43 |
| 7. 결론                             | 44 |

“연령평등 및 연령에 기반한 차별금지”에 관한 본 결론 보고서는 차별금지, 평등 및 다양성에 관한 고위급 실무그룹(High-Level Group on Non-Discrimination, Equality and Diversity, 이하 고위급 실무그룹)<sup>1</sup>의 향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정책 및 우수사례 교류를 위한 논의 주제 선정의 참고 자료로 고려될 예정이다. 또한 고위급 실무그룹이 연령주의 및 연령차별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본 문서를 토대로 삼을 것을 권장한다. 본 문서는 2024년 10월 16일 고위급 실무그룹의 승인을 득했으며, 2023년 5월 이후 개최된 동 그룹의 내부 회의<sup>2</sup>와 서면 협의 및 2024년 9월 10일 진행된 이해관계자와의 온라인 워크숍에서 다뤄진 논의를 담고 있다.

2023년 10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의 인구구조 변화: 행동을 위한 도구상자**(Demographic change in Europe: a toolbox for action)<sup>3</sup>”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채택하였다. 이는 2023년 6월 유럽이사회의 결론<sup>4</sup>에 따라 요청된 종합적인 정책 도구 마련에 대한 응답으로, 인구구조의 변화와 동 현상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해당 발표문은 연령평등 증진과 연령주의 대응을 위한 사례 공유를 촉진하고, 관련하여 성과 문서를 발간하고자 하는 고위급 실무그룹의 계획에 주목하였다.

본 문서는 먼저 연령평등 및 연령에 기반한 차별금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해당 이슈의 다양한 측면과 정의 및 통계적 수치를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이후 연령차별 및 연령주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유럽 및 국제 차원의 관련 법적·정책적 체계를 개관하며, 다양성 헌장(Diversity Charters)<sup>5</sup>의 견해, 고위급 실무그룹의 논의 및 서면 협의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령주의와 연령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및 각국 차원에서 시행 중인 정책 방안을 살펴본다.

본 문서는 생애주기적 접근을 취함과 동시에 고위급 실무그룹의 논의와 회원국들의 서면 기여 내용을 반영하여 **노인을 위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중점**을 둔다. 향후 고위급 실무그룹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활동의 범위와 초점을 조정하거나 재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

<sup>1</sup> EU 집행위원회 사무국(정의·소비자총국)은 본 그룹의 사무국을 맡아 운영하며, 본 문서의 작성에도 기여하였다.

<sup>2</sup> 연령주의 및 연령에 기반한 차별금지를 주제로 한 고위급 실무그룹 회의는 2023년 6월, 10월, 11월과 2024년 6월에 개최되었다.

<sup>3</sup> [Communication “Demographic change in Europe: a toolbox for action - European Commission](#), 11 October 2023.

<sup>4</sup> [European Council conclusions, 29-30 June 2023 - Consilium](#)

<sup>5</sup> 2024년 2월 28일 개최된 EU 다양성 헌장 플랫폼 온라인 회의에서는 연령 다양성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 1. 서론

평등과 차별금지(이하 '기본권 헌장')<sup>7</sup>에 명시되어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이 지역 내 입법의 진전과 판례의 발전 및 정책 이니셔티브의 추진은 많은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고, 나아가 보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들이 연령을 포함한 다양한 사유에 기반한 차별을 겪고 있다<sup>8</sup>.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평등을 핵심 의제로 삼고, 모든 사람이 차별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 수 있는 **평등의 연합(Union of Equality)**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집행위원회는 2020년과 2021년에 평등의 연합 전략<sup>9</sup>을 채택하여, 성별, 인종 또는 민족적 출신, 종교 또는 신념, 장애, 성적 지향 등 어떠한 사유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존엄한 삶을 살고 번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했다. 이러한 전략은 앞서 언급된 사유들에 기반한 **교차적 차별** 또한 함께 고려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sup>10</sup>에 따르면 **연령주의**<sup>11</sup>는 한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령주의는 연령에 기반하여 자기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고정관념(생각의 방식)과 편견(인식의 방식)을 갖고 차별(행동의 방식)을 행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차별에 맞서는 일은 모두가 함께 담당해야 할 과제로, EU는 특히 연령차별 대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평등대우 및 차별금지 분야의 관련 입법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며, 회원국 간 조치를 조율하는 작업, 조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EU 기금을 통한 지원을 제공하며, 회원국 간 우수사례의 공유를

---

<sup>6</sup> TFEU(유럽연합 기능조약) 제10조: 연합은 그 정책과 활동을 정의하고 실행함에 있어, 성별, 인종 또는 민족적 출신, 종교 또는 신념, 장애, 연령,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sup>7</sup> 기본권헌장 제21조는 연령 등을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24조는 아동의 권리 보호를 주장하고, 제25조는 노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연합은 노인이 존엄성, 자율성을 유지하며 사회 및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sup>8</sup> Special Eurobarometer 535, Discrimination in the European Union, 2023.

<sup>9</sup> 평등의 연합을 구축하기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다음의 5대 핵심 전략을 채택하였다: 성평등 전략([Gender equality strategy - European Commission 2020-2025](#)), EU 반(反)인종차별 행동계획([EU Anti-racism Action Plan 2020-2025 - European Commission](#)), 로마인의 평등·포용·참여를 위한 EU 전략 프레임워크([Roma equality, inclusion and participation in the EU - European Commission 2020-2030](#)), LGBTIQ 평등 전략([LGBTIQ Equality Strategy 2020-2025 - European Commission](#)), 그리고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전략([Union of equality: Strategy for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21-2030 - European Commission](#))

<sup>10</sup> [Global Report on Ageism](#), WHO (2021). [Ageism is a global challenge: UN](#) 참조.

<sup>11</sup> 용어 해설은 2장 이하 참조.

촉진하는 일이 포함된다.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부문의 참여 또한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2024년 2월 28일, 다양성 헌장(Diversity Charters) 관계자들과의 협의 회의가 개최되기도 했다<sup>12</sup>.

**세대 간 연대 역시 연령주의에 대응할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sup>13</sup>. 세대 간 연대는 각 세대가 가진 강점의 상호 보완을 통해 응집력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핵심 요소이다.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 프로젝트와 같은 세대 간 협력을 촉진하는 이니셔티브는 회복력있고 조화로운 공동체 기반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EU는 이미 2012년에 활동적 노화와 세대 간 연대의 해(Year of Active Ageing and Inter-generational Solidarity)를 선포하여, 고령화 사회를 도전인 동시에 기회로 인식하고 활동적 노화의 가치를 부각시킨 바 있다<sup>14</sup>. 고위급 실무그룹은 EU 집행위원회의 2024-2029년 정치적 지침서<sup>15</sup>에, 세대 간 공정성의 확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도전에 대응 및 새로운 현실에의 적응을 위한 세대 간 연대와 참여 확대의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음을 주목한다.

노인은 노동시장 내에서 경험과 지식, 기술의 공유를 통해 사회와 경제에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 이들의 기여는 인력난이 존재하는 부문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나아가 노인은 다양한 자원봉사와 멘토링을 제공하는 등 시민 사회에 활발히 참여하여 민주주의적 절차에도 기여한다. 가정과 지역사회 역시 노인 세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은 결속력있고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 자원이 된다. 이와 같이 노인 세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고령화는 경제적 기회로 간주될 수 있다. **실버 경제**는 기업의 이윤창출과 사회적 결속력 및 노인의 웰빙을 뒷받침할 수단으로 분석되고 있으며<sup>16</sup>, 기술, 보건 및 돌봄, 의료, 영양, 관광, 주거, 교육, 훈련 및 평생교육, 교통 및 금융 서비스, 사회적 경제 등 다양한 부문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여 GDP 성장에도 크게 기여 하고 있다.

## 2. 현안의 이해

---

<sup>12</sup> 해당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 논의되었다: 다양성 헌장이 연령을 사유로 한 차별을 인식하는 방식, 연령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표적 조치, 이니셔티브 및 우수 사례, 직장 내 세대 간 대화 및 연대, 그리고 직장 내 연령주의와 연령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EU 및 각국의 법률과 정책 수립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 등.

<sup>13</sup> EU 기능조약 제3조는 연합이 세대 간 연대를 포함한 다양한 가치를 증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sup>14</sup> [European Year for Active Ageing and Solidarity between Generations,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2012.](#)

<sup>15</sup> [Political guidelines for the next European Commission 2024-2029.](#)

<sup>16</sup> [The Silver Economy, A study prepared for the European Commission, Technopolis Group & Oxford Economics, 2018.](#)

‘연령주의(ageism)’와 ‘연령에 기반한 차별(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age)’은 상호 관련된 개념임과 동시에 연령에 따라 개인이 받는 대우에 관한 구분된 개념이다. 연령주의는 연령과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 태도, 고정관념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인 반면, 연령에 기반한 차별은 연령을 이유로 한 불공정한 대우의 구체적인 발현으로 정의된다.

‘연령주의’라는 용어는 유럽 의회, EU 각료이사회, EU 집행위원회, 유럽 경제사회위원회, 세계보건기구, 유럽평의회<sup>17</sup>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sup>18</sup> 및 기타 기관<sup>19</sup>들의 문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연령주의에 관한 종합적 분석이 담긴 WHO의 “연령주의 국제보고서”에서 참고 가능하다. 본 결론 문서에서는 ‘연령주의’와 ‘연령에 기반한 차별’이라는 용어를 다음의 의미로 사용한다:

### 1. 연령주의

- **정의:** 연령에 기반한 편향된 감정, 태도, 고정관념 및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개념
- **구성요소:** 젊은층 또는 노년층 등 특정 연령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고정관념

### 2. 연령에 기반한 차별

- **정의:** 유럽연합 기능조약(TFEU) 제10조 및 기본권 헌장 제21조에 명시된 용어로, 관련 EU 법령 및 EU 사법재판소의 해석에 따라 정의
- **구성요소:** 연령을 이유로 타인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거나, 겉보기에는 중립적인 규정 또는 조치가 특정 연령 집단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차별로 간주됨

연령평등의 실현은 연령주의에 대응하고 연령에 기반한 차별의 해소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연령에 관계없이 능동적인 삶을 영위하고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제도와 정책적 기반의 마련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연령을 이유로 개인 또는 집단 간에 발생하는 차별은 종종 일반화된 가정이나 고정관념에 기반한다. 개인이 이러한 편향적인 고정관념에 따라 겪는 차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존중받을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2023년 차별에 관한 특별 여론조사

<sup>17</sup> EU 및 국제 정책 맥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4.2절을 참고.

<sup>18</sup> [AGE Platform Europe \(age-platform.eu\)](https://age-platform.eu).

<sup>19</sup> [Ageism and Aging \(achca.org\)](https://achca.org).

(Special Eurobarometer on discrimination)<sup>20</sup>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가(2019년 대비 5%p 증가) '너무 나이가 많거나 너무 어리다는 인식'을 이유로 한 차별이 자국 내에 광범위하게 존재한다고 답했다. 연령주의는 고용, 정치 참여, 서비스 접근(특히 디지털 서비스), 보건의료 및 기초 서비스 접근 등 삶의 모든 영역과 전 생애주기에 걸쳐 나타날 수 있으며,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존재한다.

연령주의<sup>21</sup>는 무의식적인 편견, 개인 간의 무례한 상호작용과 미세차별(microaggressions)에서 노골적인 차별까지 스펙트럼의 형식으로 발현될 수 있으며, 고령자뿐 아니라 청년층을 대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가장 심각한 형태의 연령주의는 아동이나 노인에 대한 학대, 폭력, 방임 등을 포함한다<sup>22</sup>. 또한 특정 연령 집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법률, 정책, 제도적 관행 등 구조적 혹은 제도적 연령주의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EU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 3명 중 1명**이 모욕이나 학대를 받거나, 서비스를 거부당하는 등 **연령주의의 타겟**이 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sup>23</sup>.

연령주의는 흔히 다른 형태의 고정관념, 편견 및 차별과 교차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COVID-19 팬데믹은 노인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 집단에 대한 연령주의적 태도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악화시켰다<sup>24</sup>. 예컨대, 팬데믹 기간 동안 기존 및 신규 디지털 건강 도구와 서비스의 도입이 가속화되었는데, 이는 노인을 포함한 일부 집단에게 접근성의 문제를 야기했고, 보건 서비스 이용에 있어 세대 간 디지털 역량의 격차를 해결할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sup>25</sup>.

연령주의는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 사회**라는 보다 광범위한 맥락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EU 통계 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의 전망<sup>26</sup>에 따르면, EU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2016년 19.2%에서 2080년에는 29.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sup>27</sup>. EU의 생산가능인구는 2100년까지 5,74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노년부양비는 현재의 33%에서 2100년에는 60%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

---

<sup>20</sup> [Special Eurobarometer 535](#), Discrimination in the European Union, April-May 2023.

<sup>21</sup> 이러한 맥락에서 체계적 연령주의, 제도화된 연령주의, 내면화된 연령주의와 같은 특정한 형태의 연령주의 표현들 또한 논의되고 있다.

<sup>22</sup> [Mapping Child Protection Systems in the EU – Update 2023 |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참조

<sup>23</sup> [Global Report on Ageism](#), WHO (2021)

<sup>24</sup> [FRA's Bulletin #3 "Coronavirus pandemic in the EU – Fundamental Rights Implications: with focus on older persons" \(2020\)](#).

<sup>25</sup> 2030년까지의 목표는 16-74세 사이의 EU 시민 중 80%가 최소한의 디지털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sup>26</sup> [Eurostat \(2019\), Ageing Europe – looking at the lives of older people in the EU](#).

<sup>27</sup> COM(2023) 577 final. [Green Paper on Ageing](#), 2021, European Commission.



복지 및 보건 시스템과 주거를 포함한 지역 기반시설 수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럽의 농촌 및 외곽 지역의 교통 인프라에 그 영향이 더욱 클 수 있다. 이는 공공 예산 및 정책 전반에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기회를 모색하는 일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는 특히 젊은 세대들을 위해 더욱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 3. 연령주의와 연령차별의 영향

연령주의는 개인과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sup>28</sup>.

#### 3.1 연령주의와 연령차별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연령주의<sup>29</sup>는 개인의 자기 인식을 바꿀 뿐 아니라 건강과 사회 참여, 노동시장 참여와 민주주의 절차에의 참여, 경제적 독립과 수명 및 웰빙에도 영향을 준다. 연령주의는 개인의 모든 권리의 향유에 영향을 끼치며 다른 종류의 차별과 교차점을 가지나, 고위급 실무그룹은 그 중에서도 다음의 영역에서 전개되는 연령주의의 영향에 주목하였다.

- **정신적 건강:** 연령주의는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느낌과 우울감,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자존감과 정신적 안녕을 저해할 수 있다. 연령주의는 또한 외로움을 심화시키고 해로운 식단, 과도한 음주나 흡연과 같은 건강위험행동(risky health behaviors)을 부추겨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sup>30</sup>. WHO는 전 세계적으로 약 630만 건의 우울증 사례가 연령주의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sup>31</sup>.
- **신체적 건강:** 연령주의는 신체적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스트레스 수치 상승, 만성 질환 유발, 회복 속도와 인지 저하, 심지어 수명 단축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신체적 폭력:** 연령주의는 노인에게 대한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여기에는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초래하는 물리적 사용이 포함된다. 이러한 신체적 폭력은

---

<sup>28</sup> [Shifting perceptions: towards a rights-based approach to ageing, FRA, 2018](#) 참조.

<sup>29</sup> WHO, Ageism is a global challenge: UN, 18 March 2021

<sup>30</sup> [JRC Publications Repository - Ageism: a challenge for health and healthcare](#)

<sup>31</sup> 각주 30 참조.

정서적·심리적 학대, 방임, 경제적 착취 등과 함께 발생하기도 한다.

- **빈곤 위험:** 직장 내 연령주의<sup>32</sup>는 나이에 관계없이 기술 숙련, 훈련 및 고용 기회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과 낮은 급여,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 보장 혜택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으로 이어져,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키고<sup>33</sup> 경제활동 시기뿐 아니라 은퇴 후까지 이어지는 빈곤을 야기한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 재정적 배제의 위험(퇴직 강요, 근로와 연금 수급의 병행 불가를 포함)과 관련이 깊으며, 그 양상은 회원국 간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
-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연령주의는 사회 및 지역사회 활동 참여 기회를 제한하여 사회적 배제와 그로 인한 외로움, 고립감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전반적인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sup>34</sup>, 특히, 농촌 및 외곽 지역 거주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저해<sup>35</sup>할 뿐 아니라, 도시 거주자들에게도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노인의 사회적 포용과 기회의 평등 및 경제적 안정 향유가 2023-2030 신규 복지 개발 계획(Welfare Development Plan 2023-2030)<sup>36</sup>의 세부 목표 중 하나로 최초 지정되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다음의 세 가지 실행 방안—노인의 웰빙과 사회 참여 지원, 노인의 재정적 웰빙 개선과 연금 시스템 디자인, 노인을 위한 예방적 사회 복지 강화—이 계획된 바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2023년 12월 고립 대응 전략(Strategyy to Counter Loneliness)<sup>37</sup>을 채택하였으며, 이 전략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다음의 다섯 가지 전략 목표를 포함한다: 1. 고립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공론화; 2. 전문 영역과 시민 참여 분야에서 고립 예방 및 완화에 대한 지식 강화; 3. 사회복지 및 시민사회 실무자들의 대응 역량 강화; 4. 고립을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분야 간 연계를 통한 해결 노력; 5. 고립을 경험한 이들에게 낮은 진입 장벽과 용이한 접근성을 갖춘 서비스 제공. 이 전략에는 노인의 고립 문제 해소를 위한 180개 이상의 사업이 포함되며, 이 중 70개 이상은

<sup>32</sup> 월 연금 수령액이 미미한 연금생활자들 또한 빈곤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이 지적된 바 있으며, 특히 연금이 물가 상승에 부합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sup>33</sup> 경제적 격차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EU의 농업 소득은 EU 전체 경제의 평균 소득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sup>34</sup>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 Eurostat \(Europa.eu\)](https://ec.europa.eu/eurostat/tgm/table.do?tab=table&init=1&language=en&plugin=1)

<sup>35</sup>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A comprehensive approach to mental health, 7 June 2023.

<sup>36</sup> [Welfare Development Plan 2023-2030.pdf \(sm.ee\)](https://ec.europa.eu/eurostat/tgm/table.do?tab=table&init=1&language=en&plugin=1)

<sup>37</sup> [BMFSFJ – Strategien Gegen Einsamkeit.](https://www.bmfsfj.de/SharedDocs/DE/Presse/pm/2023/08/230801-strategien-gegen-einsamkeit.html)

유럽사회기금 플러스(ESF Plus)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덴마크 적십자(Danish Red Cross)와 덴마크 은퇴자 협회(Dane Age Association) 등 시민사회단체의 협력으로 운영되는 외로움 예방을 위한 국가 파트너십(National Partnership Against Loneliness)이 2023년 6월, 외로움 대응 전략을 발표<sup>38</sup>하였다. 해당 전략은 2040년까지 16세 이상 인구의 외로움 사례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예방 중심의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령 인구와 관련하여 요양시설과 같은 돌봄 환경 내에서의 공동체 의식과 '내 집 같은 편안함(homeliness)'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라트비아**는 2016년 "더 길고 개선된 근로 생애를 위한 활동적 노화 전략(Active Ageing Strategy for longer and better working lives in Latvia)"이라는 컨셉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50세 이상 고령 근로자, 특히 은퇴를 앞둔 연령층으로서 고용 유지나 노동시장 진입에 있어 상당한 장벽에 직면한 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또한, 라트비아 노동 인구의 더 길고 개선된 근로 생애를 위한 활동적 노화를 촉진하고, 다음 각 영역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언을 포함하고 있다.

- 고용: 고령 친화적 노동시장 조성
- 교육: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할 지식과 역량을 갖춘 고령 인력 양성
- 보건: 건강과 신체적 활동의 유지를 통해 독립적이고 활동적인 노년기를 최대한 연장
- 사회보장: 고령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 강화

**오스트리아**에서는 노인 의회(Seniorenrat)가 설립되어 오스트리아 노인들의 공동의 이해를 정치적 차원에서 대표 및 옹호하며, 제기된 민원은 관련 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다. 노인 의회는 모든 노인 관련 법안 및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와의 연례 연금 조정 협상에도 참여하고 있다.

**핀란드**는 2022년 노인을 위한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을 위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였다. 해당 결정에 앞서 노인을 위한 서비스 부족과 서비스 품질의 심각성을 둘러싼 공적 논의가 선행되었고, 이후 자율성과 독립적 권한을 갖춘 기구로서의 옴부즈만 제도가 설립되었다. 제도의 목적은 입법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 노인의 권리와 지위가 충분히 고려되어, 이들의 권리와 최선의 이익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옴부즈만은 매년 노인 관련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이들의 권리 실현을 위한 현안 과제를 파악하여 제시한다.

<sup>38</sup> [NPE\\_National-Strategi-mod-Ensomhed.pdf \(sammenmodensomhed.dk\)](#)

### 3.2 연령주의와 연령차별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령주의와 **연령차별**은 보건 및 사회복지, 일터, 언론, 법체계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와 사회 영역 전반에 깊숙이 퍼져 있다. 제도적 연령주의(institutional ageism)는 사회의 규범과 관행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이다. 고위급 실무 그룹의 논의는 특히 다음과 같은 연령주의의 영향을 지목하였다:

- **경제적 비용과 역량의 저활용(underutilization):** 연령에 따른 차별은 조기 퇴직, 노동력 부족,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의존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에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 고령자나 청년층에 대한 고정관념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들의 역량과 기여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 혁신과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럽의회 정책연구서비스(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에 따르면, 연령차별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고용 가능성이 평균 17%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up>39</sup>.
- **보건의료 서비스 장벽:** 보건의료 분야의 연령주의적 태도는 최적의 처치나 치료를 저지하고 적절한 장기요양 시설의 부족을 야기하는 등 불충분한 예방적 치료로 이어져 노인 집단 전체의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연령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배분은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노인은 의료 연구나 자료 수집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2020년에 시행된 한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에 따르면, 전체 사례의 85%에서 연령이 치료 유형과 의료적 처치 결정에 있어 결정적인 기준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sup>40</sup>.
- **사회, 문화적 영향:** 연령주의는 각 연령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태도를 고착화하여 사회적 결속을 저해하고 사회 내 분열을 조장한다.
- **취약 집단 및 교차적 차별에 대한 영향:** 연령주의는 성소수자, 이주민, 인종화된(racialized) 집단과 같이 사회적 취약 그룹에 속한 노인과, 다른 종류의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처한 노인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령주의는 노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나이를 불문한 여성과 청년층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4. 유럽 및 국제적 차원의 법적·정책적 맥락

---

<sup>39</sup> [Equality and the Fight against Racism and Xenophobia](#), March 2018,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sup>40</sup> Levy BR, Slade MD, Chang ES, Kanno S, Wang SY (2020). [Ageism amplifies cost and prevalence of health conditions](#). Meeks S, ed. The Gerontologist. 2020;60(1).

## 4.1 법적 체계

**EU 기능조약(TFEU) 19조**<sup>41</sup>는 EU가 연령에 기반한 차별을 비롯한 다양한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차별금지의 원칙과 노인의 권리는 **EU 기본권 헌장 21조 및 25조**에 명시되어 있다<sup>42</sup>.

고용 및 직업 부문에서는 **고용 평등 지침(Employment Equality Directive)**<sup>43</sup>이 제정되어, 종교 또는 신념, 장애, **연령**, 성적 지향 등에 관계없이 고용 및 직업 영역(채용, 직업훈련, 고용 및 근로조건 등)에서 개인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은 실질적 적용범위에 따라 공공 및 민간 부문,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대상에 적용된다. 또한, 평등 대우의 원칙은 회원국들이 연령 등 특정 사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거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 도입하여 실질적 평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편, 기존 EU 차별금지법(고용 평등 지침 포함)의 이행과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2024년 5월, 평등기구(equality bodies)에 관한 새로운 법률이 채택되었다<sup>44</sup>. 이에 따른 신규 지침은 국가 평등기구의 권한, 독립성, 자원, 권한 부여에 관한 구속력 있는 기준을 설정하여, 차별 예방, 평등 증진, 차별 피해자 지원 및 정의 실현을 지원한다. 현재 해당 법규는 각 회원국에서 이행 중이다.

고용 및 직업 분야를 넘어 EU 차별금지법제가 가진 미비점을 해결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2008년 **동등대우지침(Equal Treatment Directive)**에 대한 제안<sup>45</sup>을 발의하였다. 해당 제안서는 연령을 포함한 다양한 사유에 따른 차별로부터의 보호 범위를 사회보장, 의료, 교육, 재화 및 서비스(주거 포함)의 접근 및 제공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의 채택은 이사회회의 만장일치<sup>46</sup>가 필요한 사안으로, 집행위원회는 여전히 이를 주요 과제로 간주하고 있다.

---

<sup>41</sup>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19조.

<sup>42</sup> EU 기본권 헌장 제21조 및 제25조. 제24조는 아동 권리 보호에 관한 내용.

<sup>43</sup> 고용 및 직업 부문에서의 동등한 처우를 위한 일반적 체계를 설정한 2000년 11월 27일자 [이사회 지침 Council Directive 2000/78/EC](#), OJ L 303, 2.12.2000.

<sup>44</sup> 고용 및 직업에 있어 여성과 남성 간의 동등한 처우 및 기회 보장과 관련한 평등기구의 기준에 대한 2024년 5월 14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EU) 2024/1500(지침 2006/54/EC 및 2010/41/EU를 수정함)과, 인종 또는 민족적 출신, 종교 또는 신념, 장애, 연령, 성적 지향과 무관한 고용 및 직업 분야에서의 동등한 처우, 여성과 남성 간의 사회보장 및 재화와 서비스의 접근 및 제공에 있어 동등한 처우에 관한 평등기구의 기준에 대한 2024년 5월 7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EU) 2024/1499(지침 2000/43/EC 및 2004/113/EC를 수정함).

<sup>45</sup> [2008년 7월 2일자 이사회 지침 제안](#): 종교 또는 신념, 장애, 연령, 성적 지향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 간의 동등한 처우 원칙을 사회보장, 교육, 공중에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접근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지침 제안이다.

<sup>46</sup> 관련 최근 성과 보고서(June 2024): <https://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9043-2023-INIT/en/pdf>

차별금지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전용 법령 외에도, 다양한 정책 분야의 법령에서 연령평 등과 연령에 따른 차별금지에 대한 고려를 주류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불공정 상업관행에 관한 지침(Unfair Commercial Practices Directive)<sup>47</sup>은 연령 등의 특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소비자들을 포함하여 부당한 상업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sup>48</sup>하는 데 기여한다.

EU는 법제를 통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모든 연령대의 평등한 사법적 권리 향유를 증진하고자 한다. 관련 예시로는 형사 피의자 또는 아동 피고인을 위한 절차상의 보호에 관한 EU 지침 2016/800<sup>49</sup>과, 2013년 11월 27일자로 채택된 취약 계층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 절차적 보호에 관한 집행위원회 권고<sup>50</sup>가 있다.

EU는 회원국들과 함께,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장애인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당사자로서, 장애를 가진 노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본 문서의 맥락과 유관한 기준을 설정한 법령<sup>51</sup>도 일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유럽 접근성법(European Accessibility Act)<sup>52</sup>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초기 설계 또는 이후의 조정을 통해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웹 접근성 지침(Web Accessibility Directive)<sup>53</sup>은 공공기관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한다.

## 4.2 EU 및 국제 정책의 맥락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sup>54</sup> 및 EU 이사회<sup>55</sup>는 인구 고령화와 인구구조적 도전과제에 대

---

<sup>47</sup> [통합된 지침 본문](#)

<sup>48</sup> 2023년 10월 18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EU) 2023/2225(소비자 대상 신용계약에 관한 지침) — 본 지침은 지침 2008/48/EC를 폐지함.

<sup>49</sup> [OJ L 132, 21.5.2016, p. 1](#)

<sup>50</sup> OJ C 378, 24.12.2013, p. 8.

<sup>51</sup> [Implementation of the Marrakesh Treaty in EU law](#) 참조.

<sup>52</sup> [Directive \(EU\) 2019/882 on the accessibility requirements for products and services.](#)

<sup>53</sup> [Directive \(EU\) 2016/210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October 2016 on the accessibility of the websites and mobile applications of public sector bodies.](#)

<sup>54</sup>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7 July 2021 on an old continent growing older – possibilities and challenges related to ageing policy post-2020](#) (2020/2008(INI)).

<sup>55</sup> [Council Conclusions on Human Rights, Participation and Well-Being of Older Persons in the Era of Digitalisation](#), Brussels, 9 October 2020; [Council Conclusions on Mainstreaming Ageing in Public Policies](#) of 12 March 2021; [Council](#)

응하는 일이 증대함을 인지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정책적 수단과 인권 기반 접근을 결합하는 포괄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연령주의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여기에 포함된다. 더불어 유럽경제사회위원회(EESC)<sup>56</sup>는 노인을 단지 사회적 비용으로 여기는 관점을 넘어,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연령주의적 인식을 종식시키는 방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였다.<sup>57</sup>

평등의 연합 전략은, 각 전략의 범위 내에서 고정관념과 연령 기반 차별을 해소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촉진하며, 특히 일터에서 모든 이가 사회적 기여와 잠재력 실현을 위한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사안의 복잡성에 대응하여, 유럽이사회는 2023년 6월 결론문(European Council Conclusions)<sup>58</sup>을 통해, 각 회원국의 인구구조적 과제 해결을 지원하고 유럽 전체의 경쟁우위에 미칠 영향에 대비할 일종의 도구모음을 제안할 것을 집행위원회에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집행위는 2023년 **유럽의 인구구조 변화: 행동을 위한 도구상자**<sup>59</sup>라는 제목의 커뮤니케이션을 발표하였다. 이는 2021년 **나이듦에 관한 녹색서**(Green Paper on Ageing)<sup>60</sup>를 기반으로 하며, 인구변화와 그 사회적, 경제적 영향의 관리와 대응을 위해 회원국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 규제 도구, 재정 수단 등을 제공한다. 2023년 12월 12일 일반이사회(General Affairs Council)는 유럽의 인구변화 관리에 관한 결론문을 채택<sup>61</sup>하며, "인구변화가 경쟁력, 인적 자원, 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필요성과 인구변화 관리에 있어 추가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유럽사회권기둥**(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sup>62</sup>은 시민들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노동시장 내 평등한 기회 및 접근, 공정한 근로조건, 사회보호 및 포용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사회권기둥은 공정하고 기능적인 노동시장과 복지 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한 20개의 핵심 원칙과 권리를 담고 있으며, 연령대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참여 및 노동시장 변화에의 적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 즉, 교육, 훈련 및 평생학습, 고용 지원, 노후소득 및 연금, 장기요양 등을 포괄한다. 이 같은 접근법은 2024년 라울프 선언

---

[Recommendation of 8 December 2022 on access to affordable high-quality long-term care 2022/C 476/01.](#)

<sup>56</sup> [European Strategy for Older persons | EESC \(europa.eu\)](#), 12.07.2023에 채택.

<sup>57</sup> Shifting perceptions: towards a rights-based approach to ageing, FRA, 2018

<sup>58</sup> European Council meeting (29 and 30 June 2023) – Conclusions, Brussels, 30 June 2023.

<sup>59</sup> [COM\(2023\)577 final, 11.10.2023.](#)

<sup>60</sup> [COM\(2021\) 50 final, 27.1.2022.](#)

<sup>61</sup> [Council conclusions on managing demographic change in Europe \(12 December 2023\).](#)

<sup>62</sup> [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 – Building a fairer and more inclusive European Union – Employment, Social Affairs & Inclusion – European Commission \(europa.eu\).](#)



(La Hulpe Declaration)<sup>63</sup>에서도 확인되었으며, 해당 선언은 향후 EU 사회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EU 전략**<sup>64</sup>은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동일한 권리를 누려야 함을 강조한다. 모든 EU 회원국이 비준한 UN 아동 권리협약은 해당 분야 내 EU의 활동에 있어 주요 지침이 된다<sup>65</sup>. 통합적 아동 보호체계에 관한 집행위원회 권고<sup>66</sup>는 각국이 아동의 필요와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국 내 아동 보호체계를 개발 및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다양한 수준의 관할 기관, 여러 분야의 전문가,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장려한다. 권고에 따르면 아동 보호를 위한 모든 주체는 모든 종류의 폭력(신체적, 정신적 및 디지털 환경 내 폭력 포함)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협력해야 한다.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아동 당사자 모두가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부여 받는다. 차별의 사유와 관련된 특성을 지닌 아동은 폭력과 괴롭힘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

2023년 **유럽 기술의 해**(European Year of Skills)는 성인 인구의 매년 최소 60%가 훈련에 참여하고, 2030년까지 최소 78%가 고용상태를 유지한다는 목표<sup>67</sup>를 달성하기 위한 동력을 제공하였다. 동시에 성인 인구의 최소 80%가 기초 디지털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ICT 전문가 2천만 명을 고용한다는 **2030 디지털 컴퍼스 목표**(2030 Digital Compass) 달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기술을 위한 협약(Pact for Skills) 및 탄소중립 산업 기술 아카데미(Net Zero Industry Skills Academies) 역시 평생학습 참여자 수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노동력 및 기술 부족에 관한 집행위원회 행동계획에는 고령 근로자들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sup>68</sup>

돌봄 분야에서는, **유럽 돌봄 전략**(European Care Strategy)<sup>69</sup> 및 **고품질과 합리적 비용의 장기요양 서비스 접근성에 관한 이사회 권고문**<sup>70</sup>을 통해, 품질과 비용의 균형을 갖춘 돌

---

<sup>63</sup> 2024년 4월 16일 벨기에 라울프(La Hulpe)에서 채택된 유럽사회권기동의 미래에 관한 라울프 선언. [2024년 6월 20일 고용·사회정책·보건·소비자문제이사회\(EPSCO\) 회의\(사회정책 부문\)에서 이루어진 최근 논의 - Consilium \(europa.eu\)](#) 참조. 오스트리아(AT)와 스웨덴(SE)은 본 선언에 서명하지 않았다.

<sup>64</sup> [Strategy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M/2021/142 final](#)

<sup>65</sup>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OHCHR](#)

<sup>66</sup> [Recommendation on developing and strengthening integrated child protection systems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 European Commission \(europa.eu\)](#)

<sup>67</sup> [EU 2030 social targets.](#)

<sup>68</sup> [Labour and skills shortages in the EU: an action plan, COM\(2024\) 131 final, March 2024.](#)

<sup>69</sup> [European care strategy, {SWD\(2022\) 440 final}.](#)

<sup>70</sup> [Council Recommendation of 8 December 2022 on access to affordable high-quality long-term care, \(2022/C 476/01\).](#)



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 모두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6.7절 참조).

교통 및 이동성 분야에서는 EU 집행위원회가 평등 주류화 관련 교육자료를 개발하였다. 여기에는 정책 주기 전반에 걸쳐 나이 등 다양한 평등의 측면을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 안내서**<sup>71</sup>도 포함되어 있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연령주의 인식 제고 및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UN 총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마지막 10년과 궤를 같이하는 글로벌 협력의 일환으로 2021–2030 UN 건강한 노화 10주년(UN Decade of Healthy Ageing)을 선포하였다. 이는 전 세계 노인과 그 가족, 지역사회 전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UN 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정부 간 기구인 **고령화관련상설실무그룹(Standing Working Group on Ageing)**은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과 그에 따른 지역 이행 전략의 실행을 통해 연령주의를 횡단적 과제로 다루고 있다.<sup>72</sup>

UN 총회는 2010년에 노인 인권 보호에 관한 기존의 국제적 체계를 검토하고, 잠재적 공백과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방형고령화실무그룹(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OEWGA)**<sup>73</sup>을 설립하였다. OEWGA는 2024년 5월 제14차 회의에서 최종 권고 사항을 채택하였으며<sup>74</sup>, 이후 2024년 8월 13일 채택된 총회 결의<sup>75</sup>에 따라 임무가 종료되어 그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이 결의문은 OEWGA 권고사항의 검토를 “관련 유엔 기구”에 이관하고, 차기 UN 총회에서 고위급 후속 회의를 개최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유럽평의회 역시 노인 인권 보호 및 연령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sup>76</sup>.

---

<sup>71</sup> [Handbook for equality mainstreaming at DG MOVE](#)

<sup>72</sup>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in 2002 \(un.org\)](#)

<sup>73</sup> [United Nations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sup>74</sup> [Recommendations regarding the identification of possible gaps in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and how best to address them - A/AC.278/2024/L. 6.15 절 이하 참조.](#)

<sup>75</sup> Resolution 78/324, [Consideration of decision 14/1 of the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entitled Recommendations regarding the identification of possible gaps in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and how best to address them \(un.org\)](#)

<sup>76</sup> [Older persons -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coe.int\)](#) Also see [Study Against Ageism and Towards Active Social Citizenship for Older Persons](#), Council of Europe, 2021.

## 5. 도전 과제의 이해: 진전이 필요한 영역들

이러한 배경 하에 고위급 실무그룹 내 서면 협의와 논의에서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배제, 편견, 고정관념 및 불관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전이 필요한 여러 영역**이 지목되었다. 다만, 아래에 제시된 이슈들에 대한 EU 차원의 추가적 조치를 촉구하는 정치적 요청은 고위급 실무그룹의 논의 주제가 아니었다.

**연령주의의 인식**은,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연령주의 피해자들이 직면하는 구체적인 장벽과 장애물을 인정하고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핵심이다. 연령주의는 여전히 주로 **무의식적 편견**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연령주의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이 이 현상의 확산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하다.

또한, 모든 연령대와 성별, 이주 배경,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장애여부 등 주요 변수를 포괄한 **연령별 세분화 데이터**<sup>77</sup>를 국가 차원에서 수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데이터는 차별 위험에 노출된 집단의 상황을 평가하고, 차별 및 배제 경험을 검증하고 측정하는 데 필요하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제 및 유럽 차원의 관련 규범에 따른 회원국들의 기존 법적 의무를 토대로 한 다양한 대응 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구조적 차별과 교차차별**에 대한 조치 또한 포함해야 할 것이다<sup>78</sup>.

고위급 실무그룹은 국가별 맥락을 고려하여 성과가 필요한 영역과 각 영역에서의 차별적 관행을 종식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 **고용:**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노동시장 및 일터 내 연령차별과 불평등 해소(채용, 임금, 평생학습 참여, 고용 유지, 승진 등)와 교육에서 고용, 고용에서 은퇴로의 전환 과정에서의 불평등 완화(6.4절 참조)
- **사회보장 및 빈곤 위험:** 양질의 돌봄 및 사회서비스(특히 보육과 장기요양)와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접근성 개선. 특히 은퇴를 앞둔 연령층이나, 교육에서 고용, 고용에서 은퇴로의 전환기에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빈곤 완화 효과가 크도록 할 것(6.4절 참조)
- **민주주의 및 정치적 대표성:** 모든 세대가 선거 및 의사결정 과정뿐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청년층과 노인 모두가 사회적으로

---

<sup>77</sup> 최고령층도 포함.

<sup>78</sup> 예를 들어, 2020년 기본권 실태조사(Fundamental Rights Survey)는 고용 및 서비스 접근 분야에서의 차별 경험에 관한 정보를 특정 연령대별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다. 해당 자료는 보고서 또는 데이터 탐색기(data explore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배제되지 않도록 예방(6.5절 참조)

- **교육 및 훈련:** 청년과 노인 모두를 위한 교육 및 평생학습 증진(6.6절 참조)
- **보건 및 장기요양:** 고령의 환자 및 서비스 수요자에게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한 치료와 지원 제공으로 이어지는 연령 기반의 선입견을 해소할 것. 또한, 보건 및 장기요양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진전됨에 따라, 모든 연령대를 위한 용이한 접근성 보장이 핵심 과제로 부상. 이를 위해 적절한 디지털 보건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6.7절 참조)
- **디지털 격차:** 은행 서비스<sup>79</sup> 등 디지털 기술, 제품 및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 격차와 연령에 기반한 선입견으로 인해 노인이 겪는 접근성 이슈와 활용 장벽을 해소할 것.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이들이 경제적·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추가 비용 없이 비(非)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할 환경을 보장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 조치를 제공할 것(6.8절 참조)
- **사법 접근성:** 사법 절차 전반에서 발생하는 연령주의, 법적 절차에서의 연령차별과 사법 서비스 접근 장벽에 대응할 것. 특히 노인의 사법 절차 참여 전 과정에 걸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6.9, 6.10절 참조)
- **고정관념 및 편향된 묘사 대응:** 연령주의적 태도를 강화하거나 혐오 표현 및 증오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고정관념과 편향된 묘사에 대응할 것(6.9절 참조)
- **주거<sup>80</sup>:** 노인 또는 청년층이 주거 확보 과정에서 겪는 주거 시장 내 연령차별에 대응할 것. 이는 가정폭력 예방, 삶의 방식 선택권 보장, 노인의 탈시설화(deinstitutionalisation)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대 등을 포함함(아래 본문 및 6.7절 참조)
- **이동성 및 교통:** 노인의 특수한 필요를 고려하여, 대중교통 시스템과 인프라의 접근성, 경제성, 이용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도시와 농촌 간의 연결성을 개선할 것(6.10절 참조)<sup>81</sup>

고위급 실무그룹 내 논의와 서면 기여를 통해 제시된 **국가 차원**의 조치들은 다음의 예시

---

<sup>79</sup> 예를 들어, 대면 은행 시설 폐쇄로 인한 경우

<sup>80</sup> WHO의 Global Report on Ageism에 따르면, 연령을 기반으로 한 차별은 예비 임차인 심사 과정,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조건 및 조항, 그리고 퇴거를 요구받는 방식 등에서 발생할 수 있다.

<sup>81</sup> WHO(2017)의 [유럽의 고령친화적 환경: 정책 실행을 위한 영역별 지침서\(Age-friendly environments in Europe A handbook of domains for policy action\)](#)에서는 육외 환경, 교통 및 이동성, 주거 등을 포함한 여러 정책 영역에서의 실행 조치를 다루고 있다.

들을 포함한다:

- 공공행정 부문을 포함한 고용 영역의 채용 및 승진 관행과 다양성에 대한 모니터링
- 민간 임대 시장 내의 차별을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함으로써, 양질의 주거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도모하는 조치
- 보건 및 돌봄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차별적 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하기 위한 조치
- 교육 환경에서의 차별 방지, 연령주의 및 무의식적 편견에 대한 인식 제고, 특정 연령 집단에 대해 고정관념적, 폄하적 혹은 모욕적인 메시지나 묘사를 피하며 모든 연령의 가치와 다양성을 인정하기

고위급 실무그룹의 논의와 서면 기여에 명시된, 포용성과 다양성 기반 사회 구축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미디어의 역할을 고려할 때, **미디어 부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미디어가 사회 내 다양성을 반영할 책임을 인식하고, 윤리 기준 및 행동 강령을 준수하도록 장려하는 일을 포함한다. 또한, 연령에 기반한 혐오 및 불관용 표현의 확산, 특히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상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해야 한다<sup>82</sup>.

고위급 실무그룹의 논의와 서면 기여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법정 연령 요건의 범위 내에서) **시민이 선거에 참여하고, 투표하며, 후보로 출마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이를 촉진하고 지원해야 한다. 또한, 청년 및 고령층 커뮤니티와 그 대표들과의 정기적 대화에 참여하고, 시민사회 및 사회적 경제를 지원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고위급 실무그룹의 논의와 서면 기여는 **복합적이고 교차적인 차별**과 연령주의에 주목할 것과, 해당 맥락에서 경제적 취약 집단, 여성, 인종·민족 또는 종교적 소수자, 이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농촌 및 외딴 지역 거주자들이 직면한 어려움 역시 특별한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sup>83</sup>.

나아가 고위급 실무그룹은 개별 논의를 통해 **세대 간의 연대**와 공정성을 촉진하여 사회

---

<sup>82</sup> [Code of conduct on countering illegal hate speech online](#) 참조. 2016년 5월, EU 집행위원회는 Facebook, Microsoft, Twitter, YouTube와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8년에 Instagram, Snapchat, Dailymotion과, 2019년에는 Jeuxvideo.com, 2020년에는 TikTok, 2021년 LinkedIn, 2022년 Rakuten Viber와 Twitch가 이 협약에 참여하였다. 집행위원회와 서명 기관들은 해당 행동강령의 개정안을 마련해, 디지털서비스법(DSA) 상의 행동강령으로 인정받기 위해 제출하였다. 개정된 행동강령에는 보다 적극적인 사전적(ex ante) 위험 및 경향 식별 접근법이 포함되며, 이는 DSA의 공동규제(co-regulatory) 체계 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예정이다.

<sup>83</sup> 이민자, 로마인, 반유대주의, LGBTIQ, 여성에 대한 폭력 등을 주제로 한 기본권청(FRA)의 조사들은, 연령대별로 분류된 차별 및 경제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자료는 FRA의 온라인 데이터 탐색기(data explor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 다양한 연령 집단 간 상호 연결성과 상호 지원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6.12 참조).

마지막으로, 기후변화가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조치**를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 6. 최근 정책 이니셔티브 동향과 강화된 대응 조치

본 장에서는 앞서 제5장에서 향후 진보를 위한 핵심 영역으로 지목된 분야의 이니셔티브들을 소개하며 해결 과제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일부 조치는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접근될 수 있으며, 보다 직접적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치도 존재한다. 유념해야 할 사항은 특정 연령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나 이니셔티브의 경우 다른 연령 집단에도 혜택을 주거나, 최소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부 조치는 연령주의와 연령차별에 직접 대응하는 한편, 타 정책 분야에 연령평등적 관점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조치들도 있다. 이 장에서는 단일한 과제를 넘어서는 다차원적 대응도 함께 다룬다.

### 6.1 교차성

**모든 연령대의 다양성과, 교차차별**을 경험하는 이들을 포함한 **취약 상황에 놓인 개인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필수적이다. 차별은 많은 경우 다차원적 양상을 보이므로 교차적 접근만이 지속가능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낼 실질적인 해답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교차차별을 경험하는 청년층과 고령층의 구체적인 필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교차적 접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EU 차원의 평등 증진 및 차별 철폐에 대한 약속의 일환이다. EU의 평등 관련 전략과 도구들은 연령을 기반한 차별을 포함한 차별의 복합적이고 교차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은 다음과 같은 평등의 연합(Union of Equality) 전략들에 적용되고 있다: 성평등 전략; EU LGBTIQ 전략; EU 로마 전략적 프레임워크; 아동 권리에 관한 EU 전략; EU 인종차별 반대 행동계획; 장애인 권리 전략; 반유대주의 대응 및 유대인의 삶 증진을 위한 EU 전략. 또한 다음과 같은 관련 이니셔티브에도 적용된다: EU 피해자 권리 전략; EU 청년 전략; 유럽 돌봄 전략과 양질의 장기요양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사회 권고를

포함한 유럽사회권기둥(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 및 그 실행계획. 한편, 각 회원국의 기본권 실질 적용은 2020년 EU 집행위원회의 **기본권 헌장 전략(Charter Strategy)**<sup>84</sup>이 강조하는 핵심 축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교차적 접근은 국가 차원의 대응책에도 반영되곤 한다.

**에스토니아**의 복지개발계획에는 성 평등과 소수 집단의 기회 평등 증진을 위한 별도의 하위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해당 계획에서는 연령을 차별의 주요 사유 중 하나로 고려하여, 연령차별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거나, 성평등 및 평등 대우 담당관(Gender Equality and Equal Treatment Commissioner)제 등을 통해 관련 국가기구의 역할을 제고하고, 정책 입안자와 고용주 및 사회 전반의 인식 제고 활동을 추진하는 데 있어 연령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 6.2 EU 회원국의 법제 및 전략

EU 회원국들은 연령평등을 증진하고, 연령주의 및 연령을 사유로 한 차별에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몇몇 국가는 고용 평등 지침을 국내 법제에 반영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대상 특화된 법안 채택은 물론, 전략 및 행동계획 등 정책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 전략은 공통된 목표를 공유하면서도, 그 적용 범위나 효과 측면에서는 필연적으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 배경에는 회원국의 경제 상황<sup>85</sup>과 각국 노인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실시된 EU의 유로바로미터 조사(Eurobarometer Survey on Demographic Change)<sup>86</sup>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현재의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EU 회원국 간 및 각국 내부의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응답하였다.

**불가리아**에서는 차별방지법(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ion Act, PDA)을 통해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연령을 사유로 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차별도 포함된다. 동 법은 법 앞의 평등, 평등한 대우, 공적 생활에의 참여 기회에 대한 평등, 차별로부터의 실효적 보호를 보장한다. 연령을 고려한 다른 관련 법령으로, 사회보

<sup>84</sup> [Commission's Strategy to strengthen the application of 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in the EU of 2 December 2020.](#)

<sup>85</sup> [The 2021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 \(2019-2070\) \(europa.eu\)](#)

<sup>86</sup> [Demographic change in Europe -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 \(europa.eu\), October 2023](#)

조법(Social Assistance Act), 노동법(Labour Code) 및 사회서비스법(Social Services Act)이 있다. 이와 함께, 불가리아의 인구학적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2012-2030 개정판)과 불가리아의 활동적 노화를 위한 국가전략(2019-2030)은, 노인의 활동적이고 자립적이며 존엄한 삶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경제 및 사회 생활 전반에 걸쳐 노인의 완전한 참여를 위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룩셈부르크**에서는 2023년 8월 제정된 서비스 품질법을 통해, 요양시설 내 참여와 활동, 공용 생활공간 제공을 강조함으로써 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있다. 해당 법령은 요양시설 및 그 제공 서비스에 관한 여러 조항을 포함하며, 그 일환으로 노인의 권리 증진과 세대 및 문화 간 교류 촉진을 위한 노인 최고위원회(Higher Council for the Elderly)의 설치와 노인 관련 서비스 분야의 중재기구(Mediation Service)의 설치도 규정하고 있다.

**몰타**의 보건 및 활동적 노화부(Ministry for Health and Active Ageing)는 활동적 노화를 위한 제2차 국가전략정책 2023-2030(National Strategic Policy for Active Ageing for 2023-2030)을 발표하였다. 해당 전략은 세 가지 주요 목표에 기반하며, 각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이니셔티브가 수반된다. 주요 조치에는 학생과 직장인 등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노화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연령 편견을 방지하는 세대 간 프로그램의 개발이 포함된다. 주요 이니셔티브로는 노인 대상 학대 신고센터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설립과 연령주의에 대한 캠페인 전개, 코로나19 이후 노화 대응 전략 이행 등이 있다. 코로나19 이후 노화 대응 전략은 디지털 문해력이 부족하거나 빈곤 위험에 놓인 노인, 치매 환자, 장기요양시설 거주자 등 취약 노인층을 위한 적극적 우대 조치를 아우른다. 이와 병행하여, 몰타는 활동적 노화를 위한 국가정책 전략과 2024-2031년 몰타 제도 치매 국가전략(National Dementia Strategy for the Maltese Islands)을 수립하였다. 해당 전략은 연령평등 원칙에 부합하는 치매 예방, 돌봄, 지원을 위한 종합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스**는 취약층 대상 정책과 조치의 수립 및 이행에 있어 포용적이며 차별없는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2021-2027년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Social Inclusion)의 수혜 대상에 노인도 포함하였다. 해당 전략은 노인의 사회적 배제를 유발하는 조건들을 제거하고, 노인이 기본권을 동등하게 누리며, 자유로운 선택과 자율적인 삶을 영위하고, 경제·사회·정치·문화적 영역에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스웨덴**의 차별금지법(Swedish Discrimination Act)은 연령을 보호 사유 중 하나로 명시

하고 있으며, 해당 법은 고용과 교육 영역에 적용된다. 모든 고용주와 교육 제공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차별을 방지하고,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핀란드**의 보건복지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는 전국 연령 프로그램(National Age Programme)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차별에 주목하여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공통의 방향성과 수단을 모든 행정 부처와 선거주기에 걸쳐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슬로바키아**의 2021–2030년 활동적 노화 국가 프로그램(National Programme on Active Ageing)은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접근을 채택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을 비전으로 삼아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가 양질의 삶을 누릴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의 실현을 위해 모든 연령대가 지닌 잠재력을 촉진하고 활용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가치, 자원, 제도적 조건을 최대한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2022년 7월, 평등대우 및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으며, 해당 법은 연령을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고용, 직업훈련, 정당 참여, 교육, 보건, 교통, 문화, 사법 행정, 사회보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다.

또한 **스페인**은 성소수자 노인과 관련하여, 트랜스젠더의 실질적 평등 실현 및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2023년 제4호 법률(Law 4/2023)을 제정하였고, 여기에는 성소수자들이 겪는 복합적이고 교차적인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가 담겨있다<sup>87</sup>. 해당 법은 성소수자에 대한 평등대우 및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전략과 트랜스젠더의 사회적 포용을 위한 국가전략을 명시하고 있다. 두 전략은 현재 수립 진행중으로, 제4호 법률 내 규정된 성소수자 노인 대상 조치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조치 또한 포함할 예정이다.

**덴마크**의 노동시장 내 차별금지법은 연령을 명시적 보호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한다. 이

<sup>87</sup> 제73조는 고령의 성소수자 개인의 자율성과 적극적인 노화를 증진하기 위해, 보호와 포괄적 돌봄을 보장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보건, 사회, 돌봄 분야에서의 노년학적(gerontological)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양로시설 및 주간보호시설은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적 특성을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이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공공 행정기관은 각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 노인의 사회화, 여가, 자유 시간,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공 및 민간 커뮤니티 공간과 자원을 기반으로 성소수자 노인의 현실을 반영하는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법은 지원서 접근, 업로드 또는 제출 과정에서 고용주가 지원자의 나이와 관련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전자적 필터링이나 연령을 기반으로 한 지원자 사전 선별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6.3 연구 및 데이터 수집

EU 집행위원회는 평등 데이터(equality data: 통계 및 정책 근거를 위해 수집되는 평등 및 차별 관련 익명의 데이터)와 관련한 회원국들의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침 및 실무그룹을 운영 중이며, EU 기본권청(EU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FRA)의 지원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연령대의 상황을 진정성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세분화(disaggregation)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차별 및 피해 경험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연령주의의 구조적 양상을 모두 포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성격 및 출처의 데이터의 체계적 수집이 요구된다. 특히 취약 경제층과, 여성, 인종·민족·종교적 소수자, 이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농촌 및 외딴 지역 거주 청년과 노인의 실제 삶의 현실이 반영되어야 한다.

유로스타트(Eurostat)의 2020–2024년 전략계획<sup>88</sup>은 EU 전역의 평등 증진 및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수집·분석·공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전략은 불평등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고, 사회적 포용과 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 결정을 뒷받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유로스타트는 연령을 기준으로 한 국가 및 지역 수준의 **인구통계 및 사회경제 지표**<sup>89</sup>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2020년에 발간한 보고서<sup>90</sup> 외에도 다양한 통계 관련 기사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sup>91</sup>.

집행위원회 산하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re)는 EU 및 국가 차원에서의 연령주의의 실태와 영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관련 연구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 센터는 인구통계 아틀라스(Atlas of Demography: 인구변화의 영향에 대한 연구 데이터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sup>92</sup>를 구축하여 발전시키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인구변화 추세와 관련한 EU 전체 및 회원국 정책에 대한 분석과 지도화 자료를 구축하고 연령주

<sup>88</sup> [Strategic plan 2020-2024 – Eurostat - European Commission \(europa.eu\)](#)

<sup>89</sup> [Overview - Equality - Eurostat \(europa.eu\)](#).

<sup>90</sup> [Ageing Europe — Looking at the lives of older people in the EU — 2020 edition](#), Eurostat - European Commission.

<sup>91</sup> [Population structure and ageing](#), 2023, Eurostat – European Commission and the [Demography of Europe, 2023 edition](#), Eurostat – European Commission.

<sup>92</sup> [KCMD Web Portal \(europa.eu\)](#).

의에 대한 연구 논문도 발간하고 있다<sup>93</sup>.

2022년에는 **소비자 여건 조사(Consumer Conditions Survey)**<sup>94</sup>가 실시되어, 에너지 및 생활비 위기에 대한 소비자 반응, 코로나19 이후의 여행 의향 등을 평가하였다. 또한 **소비자 실태 점검표(Scoreboard)**<sup>95</sup>를 통해, 유럽 단일 시장 내의 최근 소비자 경험과 행동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조사 도구들은 노인들이 소비자 관점에서 직면한 문제들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통찰을 제공한다. 한편, 2021년에는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취약 성인을 위한 절차적 권리 보장에 관한 탐색적 연구<sup>96</sup>가 수행되어, 사법 접근성 측면에서 노인이 겪는 문제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였다.

**에스토니아**는 주요 연구 기관과의 협력 하에, 연구의 특수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구조사에서 상한 연령 제한을 두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10년간 에스토니아에서는 연령주의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주요 사례로는 노인의 삶의 대응 및 고령자 설문 조사(Coping of Older People and the Elderly Survey, 2015), 노동시장 내 연령차별 조사(Age Discrimination in the Labour Market Survey, 2018), 활동 제한 및 돌봄수요 조사(The Activity Limitations and Care Needs of the Population, 2020), 유럽 건강·노화·은퇴 조사(The Survey of Health,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 (SHARE), 2019) 내 자국 결과에 기반한 고령화 분석 기사집 발간과 연령차별 관련 장(章)을 포함한 노년학 대학 교재 발간(2016) 등이 있다.

**몰타**에서는 몰타대학교의 한 상주 연구자가 연령주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25개 진위형 문항으로 구성된 고령자 대상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연구<sup>97</sup>를 진행하였다.

**독일**의 연방차별금지청(Federal Anti-Discrimination Agency)은 2022년 연령주의에 관한 대표조사를 실시하여, 노화에 대한 이미지와 연령차별이 가진 사회적 함의를 보여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sup>98</sup>.

<sup>93</sup> [JRC Publications Repository \(europa.eu\)](#); Shifting perspectives: addressing ageism in media narratives (2024), Ageism: a challenge for a society of longevity (2024), Ageism: a challenge for health and healthcare (2024) 참조.

<sup>94</sup> [Key consumer data - European Commission \(europa.eu\)](#).

<sup>95</sup> 상동

<sup>96</sup> [Procedural safeguards for vulnerable adults who are suspects or accused persons in criminal proceedings \(exploratory study\): Final Report.](#)

<sup>97</sup> Formosa, M. (2022). Developing and adapting the 'Facts on ageing quiz' for Malta. Malta Journal of Health Sciences, 9(1), 36-42.

<sup>98</sup> [Antidiskriminierungsstelle - Forschungsprojekte - Ageism – images of ageing and age discrimination](#)

## 6.4 고용과 사회보장 부문에서의 차별 대응과 다양성 증진

고용 평등 지침은 고용과 직무 전반에서, 특히 연령을 포함한 다양한 사유에 기반한 차별에 대응하고, 평등한 대우의 원칙을 확립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수단이다. EU 집행위원회는 고용 부문의 **다양성과 포용, 기회의 평등**에 관한 회원국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성 헌장**<sup>99</sup>의 보급과 확산은 물론, **생애주기적 접근**을 기반으로 모든 연령대가 직면한 과제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장려하고 있다.

EU의 연례 정책조율 절차인 **유럽학기(European Semester)** 체계 하에 연례 **국가 보고서(Country Reports)**<sup>100</sup>와 (해당되는 경우) **국가별 권고(Country Specific Recommendations)**<sup>101</sup>를 통해, 각 회원국의 고용 및 사회 정책과 관련한 연령 이슈 현황이 제시된다.

**연금 적정성 보고서(Pension Adequacy Report)**<sup>102</sup>는 각국의 연금제도가 충분한 소득수준을 보장한 은퇴를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심층 분석과 정책 권고를 제공한다. 장기요양 보고서(Long-Term Care Report)<sup>103</sup>는 인구 고령화, 가구 구조 및 노동시장 변화 등 인구통계학적 추세를 고려하여, 현재 및 미래의 장기요양 수요를 추정하고 공식 요양서비스 접근의 제약을 분석한다. 또한, **고령화 보고서(Ageing Report)**<sup>104</sup>는 고령화가 중장기적으로 경제 및 재정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포용적 창업을 위한 보고서(Missing Entrepreneurs Report)**<sup>105</sup>와 같은 연구는 고령층의 창업 활성화를 장려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19년 11월 채택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사회보장 접근성에 관한 EU 이사회 권고(Council Recommendation on Access to Social Protection for Workers and the Self-Employed)**<sup>106</sup>는, 비정형 고용(non-standard employment)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고용인들

---

<sup>99</sup> [Diversity charters by EU country - European Commission \(europa.eu\)](#).

<sup>100</sup> [2023 European Semester: Country Reports](#), Directorate-General for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24 May 2023.

<sup>101</sup> [2023 European Semester: Country Specific Recommendations / Commission Recommendations](#), Directorate-General for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24 May 2023.

<sup>102</sup> [2024 Pension Adequacy Report, The 2024 pension adequacy report -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 \(europa.eu\)](#)

<sup>103</sup> Long-term care report, Trend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an ageing society, Volume 1, 2021, European Commission.

<sup>104</sup> [2024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 \(2022-2070\) - European Commission \(europa.eu\)](#)

<sup>105</sup> [OECD/European Commission \(2021\), The Missing Entrepreneurs 2021: Policies for Inclusive Entrepreneurship and Self-Employment, OECD Publishing, Paris. And Policy brief on social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activities in Europe", OECD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LEED\) Papers, No. 2013/16, OECD Publishing, Paris.](#)

<sup>106</sup> OJ C 387, 15.11.2019, p. 1.

이 적절한 사회보장을 이용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권고는, 커져가는 노동시장 내 불확실성과 연장된 은퇴 기간을 마주한 노인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의미가 크다.

**크로아티아**는 2024년부터 노인 대상 국가급여(national benefit for older persons) 지급액을 인상하고, 소득이 없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해당 급여를 수령할 조건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고령자 대상 국가급여법(Act on National Compensation for the Elderly) 개정예 근거).

**몰타**는 OECD의 권고에 따라 2014–2020년을 적용기간으로 한 활동적 노화를 위한 최초의 국가 전략 정책(National Strategic Policy for Active Ageing)을 수립하였다. 해당 전략은 평생직업훈련,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연령주의 및 연령 차별 해소, 연령 친화적 세제 및 급여제도 도입, 멘토링 제도 및 지식이전 촉진 및 일과 비공식 돌봄의 양립 지원 등의 영역에 대한 정책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권고는 60세 이상 근로자 수를 2010년 6,668명에서 2021년 17,372명으로 증가시키는 성과를 냈으며, 그 결과 55-64세 고령 근로자의 고용률이 2010년 29.1%에서 2021년 52.3%로 상승하였다.

## 6.5 민주주의와 정치적 대표성<sup>107</sup>

민주주의는 EU의 핵심 가치이자 창립 원칙 중 하나로, 이는 EU의 창설 조약에도 명시되어 있다. 투표와 공적 논의에 참여하여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민의 능력은 EU의 핵심이 되는 기본권이다.<sup>108</sup> EU 집행위원회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각 회원국의 당국 간 협력 시스템인 유럽 선거 협력 네트워크(European Cooperation Network on Elections)<sup>109</sup>를 통해, **청년층 및 고령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선거 참여를 지원하는 우수사례의 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2021년, 집행위원회는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채택<sup>110</sup>하였으며, 여기에는 EU 시민의 선거

<sup>107</sup> [Political particip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 new developments, FRA, 2024](#). 본 보고서는 EU 및 회원국 차원에서 긍정적인 진전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일부 장애 요인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있다.

<sup>108</sup> 유럽연합 조약(TEU) 제2조: “연합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 자유, 민주주의, 평등, 법치주의, 소수자 권리를 포함한 인권 존중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가치는, 다원주의, 차별금지, 관용, 정의, 연대, 양성평등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회원국들이 공유하는 공통의 가치이다.”

<sup>109</sup> [European Cooperation Network on Elections](#).

<sup>110</sup> [Democracy and electoral rights \(europa.eu\)](#).

권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2건의 개정 입법안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기존 규정을 갱신 또는 강화하거나 명확성을 높여 EU 시민들의 실질적 선거권 행사와 관련한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포용적이고 광범위한 선거 참여의 보장과 선거의 무결성 보호를 목표로 한다.

2023년 12월, 집행위원회는 EU 전역의 시민권 강화를 위한 조치를 포함한 **시민권 패키지**(Citizenship Package)<sup>111</sup>를 채택하였다. 해당 패키지에는 연령을 포함한 여러 차별 사유를 언급한 2023년 시민권 보고서(Citizenship Report 2023)<sup>112</sup>와, 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개선하기 위한 선거 우수 사례 가이드<sup>113</sup>도 포함되어 있다. 해당 조치들의 대부분은 노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선거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유럽 민주주의 행동 계획(European Democracy Action Plan)<sup>114</sup>에 따라 시민권 패키지의 일환으로 전자투표 우수사례집<sup>115</sup>이 발간되었다. 이 자료는 장애인과 노인의 투표 기계 및 온라인 투표의 접근성 보장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민주주의 수호 패키지**(Defence of Democracy Package)<sup>116</sup>는 자유롭고 공정한<sup>117</sup> 선거 절차와 시민 및 시민사회단체의 정책 참여<sup>118</sup>를 촉진하기 위한 두 건의 권고안을 포함한다. 먼저,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선거에 관한 권고안**(Recommendation on Inclusive and Resilient Elections)은 국가 정당 및 유럽 정당이 노인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 집단이 이용하는 플랫폼과 채널을 통해 인식 제고 활동, 정보 캠페인, 기타 소통 활동을 강화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들에게 노인을 포함한 일부 집단이 인터넷이나 디지털 기술에 접근하거나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고려할 것을 강조한다. 한편, **시민 참여에 관한 권고안**(Recommendation on Civic Participation)은 회원

---

<sup>111</sup> [Citizenship Package - European Commission \(europa.eu\)](#).

<sup>112</sup> [Citizenship report 2023 \(europa.eu\)](#).

<sup>113</sup> [Guide of good electoral practices in Member States addressing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with disabilities in the electoral process | European Commission \(europa.eu\)](#).

<sup>114</sup>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on the European Democracy Action plan COM/2020/790 of 3 December 2020; [Protecting democracy - European Commission \(europa.eu\)](#)

<sup>115</sup> [Compendium.pdf \(europa.eu\)](#).

<sup>116</sup> [Documents on Defence of Democracy - European Commission \(europa.eu\)](#). 6.1절 상단 참조.

<sup>117</sup> [Commission Recommendation \(EU\) 2023/2829 of 12 December 2023 on inclusive and resilient electoral processes in the Union and enhancing the European nature and efficient conduct of the elections to the European Parliament, C/2023/8626](#).

<sup>118</sup> [Commission Recommendation on promoting the engagement and effective participation of citizens and civil society organisations in public policy-making processes, C/2023/8627 final](#)

국이 시민 참여를 장려하고 민주주의 회복력을 제고할 수 있는 안전하고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장애인, 청년, 노인, 이주 시민, EU 역내 이동 시민 등 대표성이 낮은 집단의 특수한 필요를 반영해, 이들의 정치 참여를 위한 장애물을 사전에 제거 및 예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협의체는 시민의 의견을 공공 정책 과정에 반영하는 우수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유럽 미래 회의(Conference on the Future of Europe)**<sup>119</sup>는 모든 연령대의 시민이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논의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무작위로 선정된 16세부터 86세까지의 시민들이 유럽의 미래에 대한 각자의 우선순위와 의견을 교환하였고, 회의의 결과물 중 하나인 차별금지, 평등 및 삶의 질에 대한 제안 29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포함되었다: 노동시장 내 차별금지를 위한 EU 차원의 기준 마련; 차별에 가장 취약한 집단(청년, 노인, 여성, 기타 소수집단 등)에 대한 민간 기업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과, 2단계 조치로써 한시적 할당제(quota) 도입.

EU 집행위원회가 조직하는 유럽 시민 패널(European Citizens' Panels)은 이러한 세대 간의 심층적 숙고와 의견 교환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해당 패널은 EU 27개국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들로 구성되며, 주요 제안에 대한 EU 차원의 토론을 진행한다. 그 결과, 시민 권고안을 제출하여 집행위원회의 정책 및 사업 수립을 지원한다.<sup>120</sup>

EU 아동 참여 플랫폼(EU Children's Participation Platform)은 EU 내 가장 어린 시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민주적 절차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플랫폼 내 활동을 통해, 아동 세대의 고유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EU 및 각국 정책결정자들에게 공유된다.<sup>121</sup>

**에스토니아의 사회부(Ministry of Social Affairs)**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 중인 전략적 파트너십 사업인 청년 및 노인 협력 네트워크(Cooperation Network of Youth and Elderly)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노인의 이해를 대변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대표 기관 및 옹호 단체들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의 파트너 기관은 노인의 이익 보호 및 연령친화적 원칙 개발을 위한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sup>122</sup>. 현 사업 및 전 사업의 체계 내에서, 노인 대표 협의체가 구성되어 지방정부의 정책 파트너로 기능할 권한을 갖게 되며, 이들은 31개 지방자치

<sup>119</sup> [Conference on the Future of Europe, Report on the Final Outcome, May 2022.](#)

<sup>120</sup> [Citizens' Engagement Platform - European Commission \(europa.eu\).](#)

<sup>121</sup> [Feeling Safe | EU Child Participation \(europa.eu\).](#)

<sup>122</sup> 본 사업의 주관기관은 NGO 골든리그(Golden League)이며, 공동 참여기관으로 탈린대학교(Tallinn University), 프락시스 정책연구센터(Praxis Center for Policy Studies), 에스토니아 열린사회연구소(Estonian Institute for Open Society)가 있다. 이 외에 여러 기관 및 단체들이 사업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단체를 대상으로 활동을 전개한다.

핀란드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및 청년층이 정부 기관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방법론의 개발과 우수 사례 정리, 관계 부처를 위한 정보 및 교육 자료를 제작해왔다. 또한, 대상자의 온라인 참여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Digiraati.fi)이 시범 운영되었으며, 2024년 가을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 6.6 교육·훈련 및 평생학습 분야에서의 차별 예방 및 대응

교육 및 훈련 체계는 회원국의 고유 권한이지만, EU는 보완적 권한(supportive competence)을 바탕으로 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공동의 과제에 대응하고 개별 회원국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지정된 협력체계 안에서 진행되며, 교육과 훈련을 통한 차별금지 촉진을 위한 대상 특화 조치를 포함한다. 특히, 자유, 관용, 차별금지라는 공동의 가치를 교육을 통해 증진하기 위한 2015년 파리 선언(Paris Declaration)의 이행 맥락에서도 관련 조치들이 추진되고 있다.

EU는 현대 교육 및 훈련 체계 내의 평등과, 모든 연령층을 위한 양질의 포용적 교육·훈련에 대한 접근성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0년 **유럽 역량 의제(European Skills Agenda)**에는, 고령화 사회에 더욱 적합하고 유연한 교육·훈련 경로 마련을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신(新) 유럽 성인학습 의제(New European Agenda for Adult Learning)**<sup>123</sup>에 대한 2021년 EU 이사회 결의문은 성인의 공식, 비공식 및 비정형 학습(formal, non-formal and informal learning) 참여를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연구 보고서 **EU의 생애진로지도 정책 및 실천: 동향, 과제, 기회(Life-long guidance policy and practice in the EU: trend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sup>124</sup>를 통해, 모든 연령과 경력 단계를 위한 진로 개발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 교육영역 전략체계(European Education Area Strategic Framework)**<sup>125</sup> 하에서는,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운영되는 성인학습 전문가 실무그룹<sup>126</sup>이 설치되어 다음의 주제에 대한 자료를 발간하였다:

- 특수교육적 요구(Special Educational Needs): 모든 학습자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sup>123</sup> [Council Resolution on a new European agenda for adult learning \(2021-2030\) 13616/21 of 29 November 2021](#), OJ C 504, 14.12.2021, p. 9.

<sup>124</sup> [Lifelong guidance policy and practice in the EU, Trend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inal report](#), 2022.

<sup>125</sup> [Council Resolution on a strategic framework for European cooperation in education and training towards the European Education Area and beyond \(2021-2030\) 2021/C 66/01 of 26 February 2021](#).

<sup>126</sup> [Working groups of the EEA strategic framework - European Education Area \(europa.eu\)](#).







Reports)<sup>132</sup> 및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회원국별 권고안(Country Specific Recommendations)<sup>133</sup>은 보건 및 장기요양 분야에 대한 국가별 상황과 정책 방향을 개괄하고 있다. 향후 보건 및 장기요양 수요 증가와 공공 지출 추계에 관한 분석은 3년 주기로 발간되는 **고령화 보고서(Ageing Report)**에 수록되며, 이들의 재정 지속가능성은 매년 발간되는 부채 지속가능성 모니터(Debt Sustainability Monitor)를 통해 추가 분석된다<sup>134</sup>. 마지막으로, **2022년 EU 글로벌 보건 전략(2022 Global Health Strategy)**<sup>135</sup>은 **전 생애에 걸친** 국민 건강과 웰빙 증진, 보건 시스템 강화 및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확대를 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sup>136</sup>.

**유럽의 암 극복 계획(Europe's Beating Cancer Plan)**<sup>137</sup>은 회원국이 조기 발견을 위한 암 검진 참여율을 높이고, 암 진단 및 치료에의 평등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계획의 10대 대표 이니셔티브 중 하나는 2022년 2월 출범한 유럽 암 불평등 등록부(European Cancer Inequalities Registry)<sup>138</sup>로, 회원국들이 암 치료를 위한 접근법의 강점과 취약점을 파악하여 해당 분야의 불평등(연령도 사유 중 하나로 포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럽의 인구구조 변화: 행동을 위한 도구상자에** 관한 발표문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보건 및 장기요양 서비스를 보다 비용효율적으로 만들고, 특히 농촌 및 외딴 지역, 장애인, 이동성이 제한된 사람들을 포함한 다양한 집단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경제·사회에 기여하도록 돕는 도구가 되며, 사회적 접촉을 촉진하여 외로움을 완화하고, 나아가 정신 건강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U의 농촌 비전(EU Rural Vision)**<sup>139</sup>에 따르면, 농촌 지역이 보건의료 등 필수 서비스에

<sup>132</sup> 2023 European Semester: Country Reports.

<sup>133</sup> 2023 European Semester: Country Specific Recommendations / Commission Recommendations.

<sup>134</sup> The 2021 Ageing Report, Economic &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 (2019-2070), Institutional paper 148, May 2021, European Commission

<sup>135</sup> EU Global Health Strategy, 28 November 2022, Directorate-General for Health and Food Safety.

<sup>136</sup> 집행위원회는 2023년 6월 7일, [정신건강에 대한 종합적 접근에 관한 발표문](#)을 채택하였다. 이 문서는 노인을 포함한 취약 집단에 대한 지원에 특별한 초점을 두고 있다. 20개 핵심 이니셔티브 중 하나로, **낙인과 차별에 관한 EU 지침**을 마련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연령을 사유로 한 차별 문제를 다루는 데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

<sup>137</sup> Europe's Beating Cancer Plan, 3 February 2021.

<sup>138</sup> European Cancer Inequalities Registry (ECIR) | ECIR – European Cancer Inequalities Registry (europa.eu)

<sup>139</sup>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 long-term Vision for the EU's Rural Areas - Towards stronger, connected, resilient and prosperous rural areas by 2040](#), June 2021

효과적으로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 비전의 10대 공동 목표 중 하나는, 국경을 초월한 서비스(cross-border services)를 포함하여, 효율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경제적인 공공 및 민간 서비스를 갖춘 활력 있는 농촌을 조성하고, 보건 및 돌봄, 장기요양 등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다<sup>140</sup>. 마지막으로, EU 집행위원회는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을 증진한다”는 목표를 포함한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17개<sup>141</sup> 전체의 달성을 추구하고 있다.

**크로아티아**는 2020년 10월 1일 국제 노인의 날(International Day of Older Persons)을 기념하여, 연금생활자 및 노인 국가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Pensioners and Elderly Persons)를 설립하였다. 위원회는 연금 및 건강보험, 사회정책, 노인 보호 분야의 정부 자문기구로, 협력과 파트너십 정신에 입각해 운영된다.

**아일랜드**는 노인이 가능한 한 오래도록 자립성과 존엄을 유지하며 자택에서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비전은 보건의료 지원과 주거 선택지 간의 긴밀한 연계를 중요히 인식할 때 실현될 수 있다. 관련 핵심 우선순위로는 재가 및 지역사회 돌봄 지원 확대, 재가 및 지역사회 돌봄에 있어 선택권 제공, 요양시설 내 서비스 및 보호조치 개선, 치매 돌봄 강화 및 임종기 돌봄 향상 등이 있다.

**덴마크**에서는 2024년 4월, 노인 돌봄 개혁에 관한 정치적 합의가 도출되었으며, 개혁의 주요 아이디어와 내용은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상당 부분 마련되었다. 개혁의 목표는 노인의 자율성 제고, 신뢰에 기반한 행정 체계 확립, 친족 및 시민사회의 노인 돌봄 참여 확대에 있다.

## 6.8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해소

디지털 사회와 기술은 삶의 방식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디지털 전환에 수반되는 다양한 도전과제도 야기한다. EU 기본권청의 기본권 설문조사(Fundamental Rights Survey)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 빈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sup>142</sup>.

<sup>140</sup> [Rural vision - European Union \(europa.eu\)](https://european-council.europa.eu/media/e300042/1670702112121/1670702112121_en.pdf).

<sup>141</sup>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5 September 2015, A/RES/70/1,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https://www.consilium.europa.eu/media/34000/1670702112121/1670702112121_en.pdf).

<sup>142</sup> [What do fundamental rights mean for people in the EU? - Fundamental Rights Survey | European Union Agency for](https://www.fundamentalrights.europa.eu/what-do-fundamental-rights-mean-for-people-in-the-eu/)

디지털 기술은 고용뿐 아니라 사회적 포용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로, EU는 16-74세 EU 시민의 80%가 최소한의 디지털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것을 2030년까지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2023년 유로스타트의 자료에 따르면, 유럽 전체 인구의 56%가 최소한의 디지털 역량을 보유한 반면, 65-74세 노인의 경우 그 비율이 28.46%에 불과했고 여성의 경우 23.68%로 더 낮은 수준을 보였다<sup>143</sup>.

또한, 2020년 EU 이사회는 **디지털화 시대의 노인의 인권, 참여 및 웰빙에 관한 결론문** (Conclusions on Human Rights, Participation and Well-Being of Older Persons in the Era of Digitalisation)<sup>144</sup>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COVID-19 팬데믹의 맥락에서 노인의 웰빙과 관련된 이슈를 조명하고자 마련된 조치였다. 2022년 12월 **유럽의회 결의안**<sup>145</sup>은 디지털 경제에서 기본권이 완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EU의 규제 체계가 인간 중심의 디지털화를 보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2023년 EU 이사회의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 보호 및 실현을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관련 결론문**(Council Conclusions on Digital Empowerment)<sup>146</sup>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었다.

2024년 5월 21일, EU 이사회는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의 채택을 통해 **인공지능에 관한 조율된 규칙을 제정**<sup>147</sup>하고, 인공지능의 인간적·윤리적 함의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 차원의 접근방식을 조정 및 도입하였다. 또한, 2023년 11월 23일에는 성공적인 디지털 교육 및 훈련을 위한 핵심 요소<sup>148</sup>와, 교육·훈련 과정에서 디지털 역량 함양을 개선하는 방안<sup>149</sup>에 관한 두 건의 권고문을 채택하였다.

EU 집행위원회의 **신(新) 소비자 의제**(New Consumer Agenda)<sup>150</sup>의 주요 우선과제 중 하나는, 평등과 차별금지 원칙에 기반하여 다양한 취약 소비자 집단의 필요를 반영하는 것

---

[Fundamental Rights \(europa.eu\)](https://european-council.europa.eu/media/en/press-communications/infographic/infographic-fundamental-rights-digital-age-2023-10-20/p1662767.pdf), (See also [FRA's Age and Digitalisation results overview \(bmfsfj.de\)](https://fra.europa.eu/en/infographic/infographic-age-digitalisation))

<sup>143</sup> [Towards Digital Decade targets for Europe - Statistics Explained \(europa.eu\)](https://ec.europa.eu/eurostat/tgm/table.do?tab=table&init=1&language=en&code=sdg_8_4_1)

<sup>144</sup> [Council Conclusions on Human Rights, Participation and Well-Being of Older Persons in the Era of Digitalisation, Brussels, 9 October 2020.](https://www.consilium.europa.eu/media/1042447/attachment/1042447-20201009-1-1.pdf)

<sup>145</sup>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3 December 2022 on the digital divide: the social differences created by digitalisation \(2022/2810\(RSP\)\).](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ava-2022-2810.html)

<sup>146</sup> [Council conclusions on digital empowerment to protect and enforce fundamental rights in the digital age, 20 October 2023.](https://www.consilium.europa.eu/media/1042447/attachment/1042447-20231020-1-1.pdf)

<sup>147</sup>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300/2008, (EU) No 167/2013, (EU) No 168/2013, (EU) 2018/858, (EU) 2018/1139 and (EU) 2019/2144 and Directives 2014/90/EU, (EU) 2016/797 and (EU) 2020/1828 (Artificial Intelligence Act), 21 May 2024.

<sup>148</sup> [C/2024/1115.](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ava-2024-1115.html)

<sup>149</sup> [C/2024/1030.](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ava-2024-1030.html)

<sup>150</sup>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New Consumer Agenda Strengthening Consumer Resilience for Sustainable Recovery [COM/2020/696 final](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COM_2020_696_final)

이다. 이 의제는 디지털 전환이 공정하고 차별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고령 소비자의 필요를 충실히 반영해야 함을 강조한다. 집행위원회는 온라인 또는 중앙 정보센터를 통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소비자를 위한 지역 상담 서비스제공 이니셔티브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 왔다. 또한, 집행위는 소비자 인식 및 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 맥락에서, 특히, 소매 금융 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방식도 마련 중이다. EU 소비자법의 디지털 공정성에 관한 적합성 점검(Fitness Check)은, 디지털 환경에서 미성년자와 노인을 포함한 취약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적 상업 관행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기만적인 온라인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특히 노인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EU 집행위원회는 OECD **국제금융교육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of Financial Education)와 공동으로 역내 성인 대상 금융역량 프레임워크를 수립하였다<sup>151</sup>.

또한, 2023년 9월에는 EU 기본권청이 **노인의 기본권: 디지털 사회에서 공공서비스 접근 보장**이라는 보고서<sup>152</sup>를 발표하였고, 이를 계기로, 2023년 12월 EU 이사회는 2024-2028년 전자사법 전략(e-Justice Strategy)<sup>153</sup>을 승인하였다. 이 전략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디지털 사법 접근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든 접근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피의자 및 피고인의 핵심 권리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보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벨기에**에서는 노인 등 취약 집단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 접근성과 공공서비스 및 은행 서비스의 디지털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주요 정책 우선순위 중 하나이다.

**에스토니아**는 노인의 디지털 서비스, 웹사이트, 앱 이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멘토링 역량을 교육하는 과정을 개발하였다. 이 과정은 가족을 포함한 돌봄 제공자, 사서,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하며, 노인이 디지털 환경을 탐색할 때 겪는 특수한 필요를 이해하고, 고령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학습 및 교수법의 익히는 것을 목표 및 성과로 설정하였다. 해당 교육과정은 디지털 공공 서비스에 특화된 모듈도

<sup>151</sup> European Union/OECD (2022), [Financial competence framework for adults in the European Union](#). 집행위원회는 OECD 국제 금융교육 네트워크(INFE)와 공동으로 EU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금융 역량 체계를 개발하였다. European Union/OECD (2023), [Financial competence framework for children and youth in the European Union](#) 참조.

<sup>152</sup> Fundamental Rights Agency, September 2023, [Fundamental rights of older people: ensuring access to public services in digital societies](#).

<sup>153</sup> [European e-Justice Strategy 2024-2028](#), 17 November 2023.

포함한다.

## 6.9 고정관념과 편향된 묘사에 대한 대응

노인에 대한 혐오 표현과 증오범죄에 대응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포용을 증진하며,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존중과 안전, 법의 평등한 보호를 누려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데 중대한 요건이다. 고용평등지침은 연령에 기반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여기에는 **괴롭힘(harassment)**도 포함된다. 괴롭힘이란 상대방의 존엄을 훼손하고 위협적·적대적·굴욕적·모욕적인 환경을 조성하거나 그러한 효과를 초래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로 이해된다.

불법 혐오 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혐오 표현 대응 행동 강령(Code of Conduct on countering illegal hate speech online)<sup>154</sup>은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들이 혐오 표현 콘텐츠를 신속히 검토하고 필요 시 이러한 콘텐츠의 삭제를 보장하도록 이행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여러 플랫폼과 이 행동 강령에 대해 합의하여, 형법이 정한 특정 형태의 인종차별 및 외국인 혐오 표현 대응에 관한 2008/913/JHA 프레임워크 결정<sup>155</sup>에 따라 사용자들이 불법 혐오 표현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시민사회에 대한 관련 지원과 국가 당국과의 협력을 개선하고자 한다. 집행위는 강령의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플랫폼이 혐오 표현을 신속히 검토·삭제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또한, 2016년 해당 행동 강령이 도입된 이후의 기술 변화와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DSA)의 발효를 감안하여<sup>156</sup>, 서명 기관들은 본 강령의 개정안을 DSA 제45조에 따른 '디지털서비스법상 행동 강령(DSA Code of Conduct)'으로 인정하고, 불법 혐오 표현 대응을 위한 DSA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EU 집행위는 2021년 발표문<sup>157</sup>을 통해, 이사회가 EU 기능조약 제83조 1항에 명시된 '**EU 범죄(EU crimes)**' 목록에 **혐오 표현과 증오 범죄를 포함시켜** 보호 조치를 강화하도록 촉구하였다. 해당 결정이 최종 채택되면, 집행위는 혐오 표현 및 증오 범죄에 관한 범죄 구성요건과 제재에 대한 최소 기준을 정하는 부수 입법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이 부수 입법은 2008/913/JHA 프레임워크 결정에서 다루지 않은 차별 사유, 예를 들어 **연령이나**

<sup>154</sup> [The EU Code of conduct on countering illegal hate speech online \(europa.eu\).](#)

<sup>155</sup>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8/913/JHA of 28 November 2008 on combating certain forms and expressions of racism and xenophobia by means of criminal law.](#)

<sup>156</sup> [Regulation \(EU\) 2022/206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October 2022 on a Single Market for Digital Services and amending Directive 2000/31/EC.](#)

<sup>157</sup>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A more inclusive and protective Europe: extending the list of EU crimes to hate speech and hate crime COM/2021/777 of 9 December 2021.](#)

장애를 이유로 한 혐오 표현 및 증오 범죄를 다루게 된다.

## 6.10 노인 관련 분야별 과제와 EU의 대응

EU의 정책, 입법, 재정 프로그램 전반에 연령평등 관점을 주류화하는 흐름 속에서, 노인의 이해와 관련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EU 차원의 입법 및 정책 조치들이 추진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4년 5월, EU 입법기관은 **여성폭력 및 가정폭력 대응 지침**(Directive on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sup>158</sup>을 채택하였다. 이 지침은 연령차별을 포함한 교차차별의 피해자가 더 높은 수준의 폭력 위험에 놓여 있음을 인정하며, 회원국이 연령대별로 세분화된 데이터를 수집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2023년에는 **피해자 권리 지침**(Victim's Rights Directive)의 개정이 제안<sup>159</sup>되어, 범죄 피해자의 보호, 정보 제공 및 지원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 2023년,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성인과 그 법적 대리인이 국경을 넘는 상황에서 겪는 장애 요소를 해소하고자 마련된 두 건의 입법 제안**<sup>160,161</sup>이 있었다.
- **2024년판 EU 사법 성과지표**(EU Justice Scoreboard)<sup>162</sup>는 노인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선별된 제도적 장치에 대한 분석을 더욱 심화시켰다.
- **승객의 권리 개선을 위한 제안**<sup>163</sup>은, 지연·취소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과 직접 지원 강화를 통해, 다양한 여행 서비스와 교통 수단이 활용되는 복합적 여정 상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다. 또한 장애인과 노인 등 이동성 제약이 있는 여객을 위한 특별한 배려를 포함해,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환승과 이동

---

<sup>158</sup> Directive (EU) 2024/138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May 2024 on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http://data.europa.eu/eli/dir/2024/1385/oj>

<sup>159</sup>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 2012/29/EU establishing minimum standards on the rights, support and protection of victims of crime, and replacing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1/220/JHA COM/2023/424 final.](#)

<sup>160</sup>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jurisdiction, applicable law,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measures and cooperation in matters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adults.](#)

<sup>161</sup> [Proposal for a Council Decision authorising Member States to become or remain parties, in the interest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Convention of 13 January 2000 on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Adults.](#)

<sup>162</sup>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Central Bank,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COM\(2024\)950.](#)

<sup>163</sup> [COM\(2023\) 753 final.](#)

차질 시 고품질의 지원을 제공할 것을 강조한다.

- 집행위원회는 **EU 농촌 지역 장기 비전**<sup>164</sup>의 맥락에서 서비스 및 보건 접근성과 관련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2040년까지 농촌을 세대 간 연대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유럽 지역의 인재 활용을 위한 발표문 (Communication on Harnessing Talent in Europe's Regions)<sup>165</sup>을 통해 인구구조 전환의 영향이 큰 지역을 지원하고, EU 내 지역 간 격차의 발생과 심화를 방지하고자 한다.

### 6.11 연령주의 및 연령차별 대응을 위한 EU 재정 지원

유럽사회기금 플러스(ESF+)을 포함한 EU의 지역 결속 기금(cohesion policy funds)을 규율하는 공통규정(Common Provisions Regulation)<sup>166</sup>은, 프로그램의 수립, 이행, 모니터링, 보고 및 평가 전반에 걸쳐 성별, 인종 또는 민족, 종교 또는 신념, 장애, **연령**,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을 방지하는 것을 수평적 원칙(horizontal principle)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2021-2027년의 재정 계획 기간 동안, 회원국들은 총 약 222억 유로(회원국과 EU의 공동 재정)를 비차별 원칙이 반영된 사업 운영에 배정하였다.

**시민·평등·권리 및 가치 프로그램**(Citizens, Equality, Rights and Values Programme, CERV)은 EU 조약 및 기본권 헌장에 명시된 권리와 가치를 보호·증진하기 위해, 지역, 광역, 국가 및 초국가 차원의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지원한다. 에이지플랫폼유럽(Age Platform Europe) 등의 활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CERV는 연령주의의 해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모든 연령에 걸친 평등권을 요구한 첫 범유럽 캠페인인 #AgeingEqual 캠페인<sup>167</sup>의 전개도 지원한 바 있다. CERV는 아동의 권리 보호 분야도 함께 다룬다.

EU는 노인 대상 디지털 보건 기술 개발의 촉진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추진중이다. 여기에는 **활동적 보조생활 공동 프로그램**(Active and Assisted Living Joint Programme)<sup>168</sup>, **활동적이고 건강한 노화를 위한 유럽 혁신 파트너십**(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on

---

<sup>164</sup> [Communications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Empty, A long-term Vision for the EU's Rural Areas – Towards stronger, connected, resilient and prosperous rural areas by 2040, 30 June 2021.](#)

<sup>165</sup> [Harnessing talent in Europe's regions, COM\(2023\) 32 final, 17.1.2023](#)

<sup>166</sup> [Regulation \(EU\) 2021/106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June 2021.

<sup>167</sup> [About – Ageing Equal \(ageing-equal.org\).](#)

<sup>168</sup> [AAL Home 2020 - AAL Programme \(aal-europe.eu\).](#)



Active and Healthy Ageing, EIP on AHA)<sup>169</sup>, 호라이즌 2020 및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내 관련 사업 부문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보건 및 돌봄 시스템의 변혁을 위한 유럽 파트너십(European Partnership on Transforming Health and Care Systems)<sup>170</sup>은, 호라이즌 유럽의 재정 지원 하에 보다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이며, 혁신적인 양질의 보건·돌봄 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며, 노인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의 동등한 접근을 위해 설계되었다. 또한, 호라이즌 유럽의 공모과제인 “The Silver Deal”은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돌봄 및 복지, 질병 예방 및 재활, 노년기 활력과 건강 유지를 위한 연구 및 혁신 활동을 지원한다<sup>171</sup>.

**EU4Health 프로그램**<sup>172</sup>은 회원국 및 이해당사자에게 노인 대상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보건 관련 조치를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암 대응이라는 공통의 의제를 바탕으로 다음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a) 위기 대응 역량 강화, b)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c) 보건체계 및 보건 인력, d) 디지털 헬스케어.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노화의 이미지(Images of Aging) 프로그램을 통해, 연령주의 문제에 대한 공공 담론을 촉진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연방정부는 잠재된 연령주의적 행태에 대해 환기하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캠페인과 논의를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시민사회 및 학계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2021년 2월에 설립된 회복 및 회복탄력성 기구(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RRF)<sup>173</sup>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EU의 핵심 회복 수단으로, NextGenerationEU의 중심축을 이룬다. 이 기구는 2026년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팬데믹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완화하고, 녹색 전환 및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EU의 경제적·사회적·지역적 결속을 증진하고, 경제와 사회의 전반적 수준을 상향화 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크로아티아는 차별 위험에 노출되거나 사회적으로 주변화된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

<sup>169</sup> [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on Active and Healthy Ageing | ESN \(esn-eu.org\).](#)

<sup>170</sup> [THCS \(thcspartnership.eu\).](#)

<sup>171</sup> [Horizon Europe Health Calls 2023 - The Silver Deal - Person-centred health and care in European regions\(Destination 1\) - European Commission \(europa.eu\).](#)

<sup>172</sup> [EU4Health programme 2021-2027 – a vision for a healthier European Union - European Commission \(europa.eu\).](#)

<sup>173</sup>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 European Commission \(europa.eu\).](#)



회적 멘토링 제공을 위해 개혁을 실시하고 투자를 도입할 예정이다.

**폴란드**는 부모, 특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과 투자를 추진 예정이며, 이를 위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가능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개혁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기준 마련, 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 지침과 돌봄 서비스 표준의 법제화, 보육시설 확충 등을 포함하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 6.12 세대 간 연대

세대 간 공정성은 아동·청소년·성인·노인 세대 간의 공정성뿐 아니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공정성을 모두 포함한다. 이는 경제적·사회적 형평성, 생활 수준, 기후변화의 영향 등 다양한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

세대 간 연대는 사회 내 다양한 연령대 간의 상호 연결성과 상호 지원을 의미한다. 이는 세대 간의 자원, 지식, 공감을 나눔으로써 공동체의 응집력과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는 개념이다. 연령이 다른 개인 간의 유대가 강화될수록, 사회는 협력과 포용을 기반으로 번영하는 회복력 있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다.

세대 간 공정성과 연대를 증진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나이들에 관한 녹색서(Green Paper on Ageing)<sup>174</sup>를 발표하며 유럽 사회의 고령화가 가져올 도전과 기회에 대한 폭넓은 정책 논의를 개시했다. 해당 녹색서는 고령화가 사회 전반에 영향과 그 규모 및 속도를 강조하며, 건강한 장수 사회를 위한 새로운 정책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노동시장 참여 확대의 필요성, 일자리 창출의 기회, 고령화가 경력·삶의 질·연금·사회보장·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조명한다. 해당 문서는 생애주기적 접근법을 바탕으로, 고령화가 전 세대 및 인생 전 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룩셈부르크**에서는 가족·연대·공생 및 이주민 수용부(Ministry of Family Affairs, Solidarity, Living together and Reception)가 룩셈부르크 대학교와 협력하여,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과 연령주의(청년 포함)를 주제로 한 인식 제고 및 옹호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현재 룩셈부르크는 '잘 나이 들기(Ageing Well)'에 관한 국가 전략을 수립 중이며, 이는 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노인의 자율성·독립성을 증진하고, 낙인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며, 사회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인식 제고 활동을 포함한다.

<sup>174</sup> [Green Paper on Ageing: Fostering solidarity and responsibility between generations COM\(2021\) 50 final, 27.1.2022](#)

한편, 몰타는 몰타의 고령화 정책: 쟁점, 정책, 향후 동향(Ageing policy in Malta: Issues, policies and future trends) 보고서<sup>175</sup>를 통해, 생애 후반기에 있는 개인의 긍정적 기여를 강조하였다. 여기에는 기부, 손자녀 및 가족 돌봄, 가사 지원, 정서적 지지, 그리고 제3기 인생 대학(University of the Third Age) 등을 통한 평생학습에의 참여와 교육 활동이 포함된다.

### 6.13 인정, 인식 제고 및 주체성 강화

유럽 전역의 모든 연령대가 직면한 도전과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인식 제고의 기회를 마련하며, 이러한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성찰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차별금지, 평등 및 다양성에 관한 고위급 실무그룹**<sup>176</sup>과 같은 관련 조직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회원국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논의와 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각국 정부 및 시민사회단체가 EU의 관련 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시민사회와 사회적 경제 및 지역사회 기반 조직의 참여 역량을 강화**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EU는 2020년부터 매년 5월을 **유럽 다양성의 달(European Diversity Month)**로 지정해, 모두를 위한 평등하고 포용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념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집행위원회는 기업과 단체에 직장 내 다양성과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행사와 활동을 기획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포용과 다양성의 유럽 수도상(European Capitals of Inclusion and Diversity Award)을 통해 차별 없는 사회를 조성하고 포용을 증진한 EU 내 도시,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노력을 치하하고 있다.<sup>177</sup>

### 6.14 모범을 통한 선도

고위급 실무그룹은 EU 집행위원회가 다양한 연령대의 직원들 간의 교류와 연결을 촉진하고 이들이 보유한 폭넓은 역량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2022년 12월, 집행위원회 인사총국(DG HR)은 **다양성 및 포용 행동계획(Action Plan on Diversity and Inclusion)**<sup>178</sup>을 채택하였으며, 그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sup>175</sup> Ageing policy in Malta: Issues, policies and future trends, Formosa, M. (2015), Malta: Book Distributors Limited.

<sup>176</sup> [Network of experts in the field of anti-discrimination \(europa.eu\)](https://ec.europa.eu/equality-network/).

<sup>177</sup> [European Diversity Month - European Commission \(europa.eu\)](https://ec.europa.eu/equality-network/).

<sup>178</sup> [People first - Diversity and inclusion \(europa.eu\)](https://ec.europa.eu/equality-network/).

직원이 연령에 상관없이 존중과 지원을 누리고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포용적이고 매력적인 직장문화 조성, (2) 세대 간 학습과 협력을 장려하는 근무 환경 조성, (3) 연령을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유지.

집행위원회는 세대 간 시너지를 촉진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코칭, 멘토링, 리버스 멘토링(reverse mentoring), 퇴직자 경험 전수(legacy talks), 경력 상담, 신규 직원 온보딩 시 세대 간 전문성 공유 등 지식 이전 및 학습·역량개발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EU 집행위원회는 홍보, 선발 및 채용 과정에서의 다양성과 포용 증진, 인식 제고 활동을 통해 인력 다양성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블루북 연수 프로그램(Blue Book Traineeship programme)<sup>179</sup>과 주니어 전문가 프로그램(Junior Professional Programme, JPP)<sup>180</sup>의 운영을 통해 젊은 세대의 집행위원회 진입을 촉진하고 있다.

2023년 2월, EU 대외관계청(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EEAS)은 **2023-2025년 다양성과 포용 의제**(EEAS Agenda for Diversity and Inclusion (2023-2025))를 채택하였고, 이후 2023-2025년 직장 내 다양성과 포용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 for Diversity & Inclusion in the Workplace 2023-2025)을 채택하였다. 두 문서 모두,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이 존중과 지원을 누리고 가치를 인정받는 포용적인 업무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실행 조치에는 세대 간 학습 및 협력, 지식 이전, 경력 강연(career talks), 멘토링 및 리버스 멘토링, 경력 개발 및 코칭 등이 포함되어 있다.

## 6.15 국제 협력

EU 인권 실무그룹(Council Working Party on Human Rights, COHOM)은 유럽연합의 대외 관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며, 유엔 등 다자간 인권 포럼 내에서 EU 회원국의 공동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COHOM은 EU의 기타 관련 기관들과 함께, 노인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개방형고령화실무그룹(OEWGA)**<sup>181</sup> 내에서 EU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여하였다.

---

<sup>179</sup> 유럽의 다양성을 반영한 블루북 연수 프로그램은,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지원자에게 동등한 기회와 접근을 최대한 보장한다.

<sup>180</sup> JPP는 유럽 공공행정 부문 내 주니어 직원의 유입과 통합 강화를 목표로 하며, 채용 경로의 다양화를 지원하고, 보다 균형 잡힌 인력 구성을 도모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보다 매력적인 고용 제안을 유럽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추가적 수단으로 기능한다.

<sup>181</sup> 4.2절 참조.

2024년 5월 제14차 OEWGA 최종 회의에서 정부 간 합의로 채택된 권고사항<sup>182</sup>은, 노인 인권 보호와 관련한 미비점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비배타적인 방식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해당 방안에는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인권 문서 제정, 기존 인권 조약에 대한 선택의정서 채택, 노인 인권 이슈를 다자 포럼 및 관련 인권기구 보고서에서 다룰 것과, UN 정부간 절차에서 노인 인권에 주목할 것, 고령화에 관한 국제행동계획의 업데이트 가능성 검토, 지역 협력 강화, 데이터 수집 역량 강화, 연령주의와 고정관념 대응 및 인식 제고 활동 등이 있다.

OEWGA 프로세스는 UN 총회 결의 78/324에 따라 종료되었으며, 해당 권고사항은 '관련 유엔 기구'로 이관되었고, 차기 UN 총회 회기 내 고위급 회의에서의 후속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

EU는 국제 파트너십에 있어 인권 기반 접근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모든 사업 주기 전반에 걸쳐 평등과 차별금지 원칙이 존중되고, 연령 등 다양한 사유에 기반한 구체적 요구사항이 분석 및 통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신(新)유럽개발컨센서스(New European Consensus on Development)는 EU 및 회원국의 개발 정책에 대한 공동 비전으로, 모든 인권을 포괄하는 인권 기반 접근법을 개발 협력에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본 컨센서스는 포용과 참여, 차별금지, 평등과 형평성 등 인권 원칙의 증진을 이 접근법의 핵심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거주지, 인종, 성별, 연령, 장애, 종교 또는 신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이주 배경 등 어떠한 요인과도 관계없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는 EU와 회원국의 의지는 EU의 주요 자원인 이웃, 개발 및 국제협력 기금(NDICI-Global Europe)에 명시되어 있다.

EU에서는 연령주의에 대응하고 포용성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연령별로 구분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활동뿐 아니라, 세대 간 대화를 촉진하는 노력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WYDE 프로그램의 여성 정치 참여 부문에서는 고위 정치인이 청년 정치인을 멘토링하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 7. 결론

본 결론 문서는 연령주의 및 연령에 기반한 차별의 다양한 차원과 그 영향, 그리고 이를

---

<sup>182</sup> Recommendations regarding the identification of possible gaps in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and how best to address them, [A\\_AC.278.2024.L.1 - E.pdf \(un.org\)](#)

해소하기 위한 EU 및 국제 차원의 대응 현황을 포괄적으로 개관한다. 본 문서는 EU 집행위원회 관련 부서, 회원국, 민간 부문, 다양성 헌장,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고위급 실무그룹이 정책 및 우수사례에 관한 논의 주제를 설정함에 있어 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초석적 문서의 성격을 지닌다.

